



PUBLIC PROCUREMENT MANAGER

공공조달관리사 마스터

공공계약관리

필기 제3과목

출제기준 완전매핑판 · 이론+시험전략 통합

2026 출제기준 완전매핑

PART 3 · 제1장

계약관리 일반 절차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3 · 필기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

제3과목 제1장 「계약관리 일반 절차」는 공급자가 결정된 뒤 계약을 **체결·변경·이행·종결**하는 전 과정을 다룹니다. 계약의 원칙과 요건(1절), 물가변동·설계변경·해제해지·분쟁해결 등 계약변경 관리(2절), 납품 점검·성과관리·보증금 등 계약이행 관리(3절), 납품검사·대금지급·지체상금·하자보증 등 계약종결 관리(4절)를 단계적으로 익힙니다.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원칙과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계약의 **변경 요건과 절차**(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를 이해한다.
- 계약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계약 **성과관리 방법론**(이행실적평가·SLA·PBSC)을 이해한다.
- **납품검사·검수, 대금지급, 지체상금** 등 계약종결 절차를 이해한다.
-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선금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Keywords)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 계약관리 절차(Contract Management Process) · 계약변경(Contract Change) · 물가변동조정(E/S·D/S) · 설계변경 · 계약해제·해지 · 지체상금 · 계약보증금 · 서비스수준관리(SLA/SLM) · 성과기반응역계약(PBSC) · 계약종결 절차(Contract Termination Process)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1 계약관리 계획 / 2 계약변경 관리 / 3 계약이행 관리 / 4 계약종결 관리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1

계약관리 계획

이 절의 핵심

공공계약은 대법원이 **사법(私法)계약**으로 보며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나, 「국가계약법」 제5조의 **신의성실·부당특약 금지** 등으로 제한됩니다. 계약은 **의사표시·이행가능성·법적사회적 타당성·확정성**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체결 후에는 착수협약·투입계획·하도급 승인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1-1-① 계약관리 원칙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5(계약의 원칙) · 지방계약법 § 6 · 민법(사적자치·계약자유)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사적자치의 대표가 **계약의 자유**이며, 이는 **체결의 자유·상대방 선택의 자유·내용 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계약 자유의 내용	의미
체결의 자유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포함.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
상대방 선택의 자유	원하는 상대와 계약할 수 있고,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강요받지 않을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가장 중요한 요소.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자유이며, 성립한 계약내용의 변경·보충도 포함
방식의 자유	계약 성립은 당사자 합의이며 원칙적으로 특정 방식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당사자가 경제적·지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는 형식적 자유가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법률에 따른 외적 제한·간섭**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계약법」 제5조는 **대등한 입장·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그 효력을 무효로 선언합니다(제3항·제4항, 부당특약 무효는 2019. 11. 26. 신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물품·용역에 차별되는 특약을 정할 수 없습니다(제2항).

1-1-② 계약관리 계획 (계약관리요소)

☞ 근거법령 · 민법(쌍무·합의계약) · 국가계약법 · 각 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계약은 협상 완료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이루어지는 **법률적 행위**로, 구매·대금지급 의사표시와 공급 의사표시를 구두 또는 문서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은 법률적 접근뿐 아니라 **관리적·행정적 접근**도 가능한데, **계약행정**이 구매 준비·완료에 필요한 모든 행동이라면 **계약관리**는 구매관리 내용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계약의 5대 기능

- **증거기능**: 구매자·공급자가 합의했다는 증거이자 이견 해결·조건 해석의 근거
- **관리기능**: 이행을 촉진·규정. 장기계약·연구개발계약은 합의하에 내용 변경 가능
- **위험전가기능**: 위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해 재정적 손실을 조정
- **지불기능**: 대가 지불 조건 포함. 지불 형태에 따라 계약형태 결정(예: 확정가격계약 FFPC, 원가보상계약 CRC)
- **동기부여기능**: 이익 창출 의지를 자극. 유인계약(IC)은 동기부여 성격이 강함

계약이 강제구속력을 지니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성립요건** 4가지를 갖추어야 하며, 구매자·공급자 관계는 「형법」보다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립요건	내용
① 의사표시	구매·공급 쌍방의 합의에 따른 의사표시(쌍무계약·합의계약)
② 이행가능성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간·장소·수량·가격 조건대로 이행할 능력.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이면 안 됨
③ 법적·사회적 타당성	흙진 물건 납품 등 반사회·반법률적 내용은 적법한 계약이 될 수 없음
④ 확정성	내용이 분명해 당사자·제3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예: 보험개시시간 설정)

계약서 해석의 우선순위 (일반원칙)

- ①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 ② 합의로 추가된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 ③ 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 ④ 계약서 명시사항이 사법(민법) 일반원칙에 우선(단, 민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면 배제)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7조는 계약서(갑·을지) → 추가특수조건 → 품질관리 특수조건 → 특수조건 → 규격서 → 일반조건 → 입찰권유서 → 입찰유의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되, 관계법령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1-1-③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착수협의

 근거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13 · 공사계약일반조건 § 17

용역·공사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주처에 **착수신고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해 계약 이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는 계약상대자가 착수 시 ①**용역공정예정표** ②**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③**기타 지정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과업내용 변경 시 서류를 변경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서류 조정을 요구하거나 진행 지연 시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④ 착수시점·보고(점검)일정·납품대상·투입인력 등

 근거법령 · 공사계약일반조건 § 17 · 공사입찰유의서 § 11(산출내역서)

용역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하며, 공사는 ①**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은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②**10억 원 이상은 20일** 이전에 착공하도록 합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①**월별 공정·수행공사금액** ②**인력·장비·자재 현황** ③**계약변경·계약금액 조정 내용** ④**현장 사진** 등을 갖춰 그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착수(착공) 시점
용역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계약조건에 따름)
공사(추정가격 10억 미만)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전 착공
공사(추정가격 10억 이상)	계약 체결일부터 20일 이전 착공

공사입찰 시에는 가격투찰의 근거가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데(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은 입찰서에 첨부, 그 미만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 이는 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정당한 계약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1-⑤ 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 계획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29 · § 31 · 시행령 § 32 · § 34 · 공사계약일반조건 § 42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출(시공사) → 하도급 적정성 검토(공사감독자) → 발주청 보고(7일 이내)** 절차를 따릅니다. 하도급계약 통보는 **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변경·해제 시에도 같습니다. 공사감독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자격 적정성, 통지기간 준수, 하도급대금 보증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발주청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험포인트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기준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 ①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 상당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②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 대상 발주자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쉽게 이해하기

공공계약은 대법원이 **사법(私法)계약**으로 봐서 '알아서 합의하라'는 계약자유가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 돈을 쓰는 만큼 국가계약법 § 5가 **신의성실·부당특약 금지**라는 안전핀을 걸어둔 것이죠. 착수 뒤에는 착수신고서로 **일정·투입인력**을 못 박아 나중 분쟁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암기: 계약자유 4가지 = '체·상·내·방'**(체결·상대방선택·내용결정·방식). 이 중 **내용결정의 자유**가 가장 중요.

구분	용역 착수	공사 착공
시점	체결 후 14일 이내	10억 미만 10일 / 10억 이상 20일 이전

⚠️ **함정: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도급 중 하도급분의 **82%**,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미달이 기준. 두 숫자를 바꿔 내는 선지 주의.

2

계약변경 관리

💡 이 절의 핵심

계약은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함이 원칙이나,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해 ① 물가변동 ② 설계변경 ③ 기타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계약법 § 19). 이 절은 조정제도와 함께 계약의 **해제·해지, 손해배상, 분쟁해결**(민사·행정·헌법) 절차를 다룹니다.

1-2-① 변경계약 관리 일반절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5 · § 19 · 지방계약법 § 6 · § 22 · 민법(사정변경의 원칙)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고, 사후에 어느 한쪽에 불리한 사정이 발생해도 계약내용을 부정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장기 이행 계약에서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불공평·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해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명시한 것이 「국가계약법」 제19조입니다. 공사변경은 이 **3가지 외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 미숙지·덤핑수주를 이유로 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변경계약 처리 절차 (일반)

(1)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 (2) 합의각서 작성(발주담당자·계약상대자 간) → (3) 변경계약 의뢰(방침서·합의각서·준공기한 연기 의뢰서·산출내역서 등) → (4) 변경계약서 초안 송신(나라장터) → (5) 보증서·인지세 제출 및 초안 응답서 제출 → (6) 변경계약 체결(dBrain 계약대장 등록)

※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인지세** 추가 징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1-2-② 변경계약 절차 실행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64(물가변동) · § 65(설계변경) · § 66(기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74

[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De-Escalation)은 계약 체결 후 물가가 급격히 변동한 경우 조정하는 제도로, 다음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64).

조정요건	내용
① 기간요건	계약 체결일(장기계속은 제1차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② 등락요건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증액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감액은 발주기관이 통보), 대법원도 조정은 자동이 아니라 적법한 **조정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증액 시 계약상대자가 조정내역서를 작성·제출(E/S), 감액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통보(D/S)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합니다.

조정금액 산출과 공제

증감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부분의 대가**입니다. 선금은 조정기준일 이전 지급분에 한해 공제(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하며,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 선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공제하나, 개산급으로 지급했거나 조정신청 후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됩니다.

구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산출방식	모든 품목·비목의 등락을 개별 계산해 등락률 산정	비목을 비목군으로 편성해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대비
적용대상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예정가격 기준 계약	원가계산 예정가격 기준 계약
장점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	지수 이용으로 조정률 산출이 용이
단점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노력 필요	평균가격 개념이라 실제 반영이 미흡할 수 있음
용도	단기·소규모·단순공종	장기·대규모·복합공종

같은 계약에서 두 방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하나를 명시하며, 명시 없으면 **품목조정률**을 적용합니다(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을 원하는 경우 제외). 특례로 **단품 슬라이딩**은 특정 규격 자재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이면 그 자재에 한해 조정하되 기간요건(90일)은 동일 적용합니다.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주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 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설계서’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의미합니다. 조정 기준(시행령 § 65)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상대자 요구	발주기관 요구	신기술·신공법
감소물량	계약단가	계약단가	계약단가
증가물량	계약단가(단, 계약단가>예가단가면 예가단가)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낙찰률 범위 안에서 협의(불가 시 합산액의 50%)	계약단가(단, 계약단가>예가단가면 예가단가)
신규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상동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조정금액	증감금액 그대로 조정	증감금액 그대로 조정	절감금액의 30%만 감액 (70%는 수급인 이익)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며,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로 체결된 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부 책임 사유나 불가항력 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량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변경(공사이행기간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합니다(시행령 § 66). 설계변경(공사물량 증감 수반)과의 차이는 **공사물량 증감 수반 여부**입니다.

1-2-③ 계약해제·해지 절차 및 사후조치

☎ 근거법령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26 · § 27 · 국가계약법 § 27 · 시행령 § 75 · § 76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38

해제는 계약 효력이 **소급해 소멸**(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함,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고,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장래효) 법적 행위입니다. 다만 건설도급계약은 특성상 「민법」 해제규정 적용이 상당 부분 제한됩니다. 해제·해지 대상은 **계약상대자 책임 사유**(§ 26)와 **사정변경에 의한 발주자 불가피 사정**(§ 27)으로 나뉩니다.

계약상대자 책임 사유(§ 26)	사정변경(발주자 사정, § 27)
납품기한 내 납품 거부·미완료 / 납품 가능성 없음이 명백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도달 / 장기물품제조 2차 이후 미체결 / 뇌물·불법·부정행위 / 허위·부정 방법 서류로 계약 체결 /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 불가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 과다한 지역 민원에 따른 사업취소 /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 변경

📄 해제·해지 시 조치사항

- ① **통지**(내용증명 등) → ② **대가 지급**(기납부분 인수 시 상당액, 선금잔액 공제·지체상금 상계 후) → ③ **선금반환청구**(귀책 시 약정이자 가산) → ④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무 불이행 시) 또는 즉시 반환(발주자 불가피 사정 시) → ⑤ **부정당업자 제재**(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시, 일반적으로 6개월부터)

발주기관 사정으로 해제·해지 시에는 ① 미지급 대가(선금 공제) ② 철수비용을 해제·해지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합니다.

1-2-④ 손해배상 절차 및 사후조치

☎ 근거법령 · 민법 § 551 · § 673 · 공사계약일반조건 § 45 · 국가계약법(계약보증금·지체상금)

법정 해제·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 551) 해제·해지한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실무상 **계약보증금·지체상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반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책임 사유로 해제·해지되면 **기성금 상당 + 이행이익(계약을 이행했다라면 얻었을 이윤)**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사정변경 또는 **공사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제·해지를 통보받으면, ①미지급 시공대가 ②철수비용을 수령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민법」 제673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지출비용+완성 시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며 과실상계·감액을 주장할 수 없으나, 수급인이 노력·자료를 다른 데 사용해 얻은 소득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합의 해제·해지**는 특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느 당사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⑤ 분쟁해결 절차

☎ 근거법령 · 민사집행법 · 민사조정법 · 중재법 · 국가계약법 § 28의2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행정기본법 · 헌법재판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최종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 수단은 **민사상·행정상·헌법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주요 수단
민사상	민사보전·집행(가처분 등), 민사소송(이행·확인·형성 청구), ADR (화해·조정·중재)
행정상	행정심판(협의: 행정심판법 적용), 행정소송(항고소송·취소소송 등), 집행정지
헌법상	헌법재판(헌법소원 중심). 위헌법률심판·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 ADR — 화해 · 조정 · 중재의 비교

- **화해**: 재판 외 화해(민법 § 731 이하)와 재판상 화해. 국가가 당사자면 법무부 장관 사전 지휘 없이 임의 화해 불가로 활용 사례가 적음
- **조정**: 당사자 양해로 합의 유도(민사조정법). 조정조서 기록 시 화해와 같은 효력.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 조정제도 별도 존재(국가계약법 § 28의2)
- **중재**: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구속력)이 있어 수락 여부와 무관.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

행정상 수단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우수제품지정 취소, 거래정지, 판매정지,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물량배정 중지** 등 침익적(제재)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항고소송이 다수이며, 본안소송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이 자주 활용됩니다. 헌법상으로는 법규범을 규제하는 **헌법소원**이 주로 쓰입니다.

✨ 쉽게 이해하기

계약은 정한 대로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물가가 갑자기 뛰거나 설계가 바뀌면 한쪽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민법」 **사정변경의 원칙**을 빌려와 국가계약법 § 19로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기타 변경** 딱 3가지만 금액을 조정하게 열어둔 것입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일로(소급), **해지**는 지금부터 종료(장래)라는 점이 핵심 구분이죠.

🔑 **암기: 물가변동 = '90일 + 3%' AND**(둘 다 충족해야 최초로 되는 날 = 조정기준일). 증액은 **신청(E/S)** 있어야, 감액은 발주기관 통보(D/S).

구분	물가변동 § 64	설계변경 § 65	기타 § 66
계기	물가 등락	공사량 증감	공사량 증감 없음

⚠️ **합정: '90일 또는 3%'는 오답.** AND 조건이며 당사자가 조정기준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음. 단품슬라이딩은 **15% 이상**.

3

계약이행 관리

💡 이 절의 핵심

계약이행 관리는 **공급(납품)·조건 이행 점검·미이행/지연 관리·성과관리·위험관리·계약보증금**을 포괄합니다. 미이행·지연을 담보하는 제도가 **계약보증금**(위약금 성격,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지연 시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합니다. 성과관리 도구로 이행실적평가·**SLA/SLM·PBSC**가 있습니다.

1-3-① 계약 대상물 공급 (납품·과업이행 및 시공 등)

📌 근거법령 · 구매조달 일반이론(수요→계약관리 7단계)

구매절차는 물품·서비스의 **수요**에서 출발합니다. 수요부서가 수요를 제기하면 구매부서가 규격·물량·소요시기를 정하는 **수요의 상세화**를 거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경쟁입찰·단독협상·상시 공급제안 등으로 **공급자를 발굴**한 뒤 제안서를 평가해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관리합니다. 공공조달의 경우 이 과정에 더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계	내용
1	수요의 제기
2	구매 계획
3	수요의 상세화
4	공급자 발굴
5	공급자 선정
6	계약 체결
7	계약 관리

1-3-② 공급 계약조건 이행 점검

📌 근거법령 · 조달청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 13 · 조달사업법 시행령 § 25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15

납품은 계약에 따라 제품·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으로, 단순 전달이 아니라 계약 이행의 일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신뢰성**이며 이를 위한 필수 요소가 **품질관리와 시간관리**입니다. 공공조달에서는 납품 조건을 준수해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활동이 수반됩니다.

예컨대 조달청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3조(계약이행실태 점검)는 계약담당공무원·품질보증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공장을 **수시 또는 불시 점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협조해야 하며, 규격미달(경결함·중결함·치명결함)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 해당(전체) 품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 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3-③ 계약이행 및 조건 미이행·오류·지연 관리

☞ 근거법령 · 계약보증금(위약금)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지방계약법

계약 이행조건이 미이행되면 일반적 대응은 **계약의 해제·해지**이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종합쇼핑몰에서는 **거래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미이행·지연을 담보하는 제도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교부받아 불이행 시 수령자가 이를 갖는 **위약금 성격**의 약정입니다(사적자치·계약자유에 따라 유효). 대법원도 계약보증금이 계약상대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의 손해를 담보하며, 채권자의 **손해액 증명 부담**을 덜어준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이행이 지연되어 납품된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지방계약법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채무이행 지체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손해 발생 사실·손해액 증명 부담을 덜어주고 벌칙적 성격을 띠며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1-3-④ 계약성과관리 (이행실적평가·SLA·성과기반계약)

☞ 근거법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43·§ 44 · SLM/SLA 체계 · PBSC(미국)

계약 이행실적평가는 계약상대자의 이행 결과를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해 향후 계약에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의 실적을 평가·등급화해 수요기관 구매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결과를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합니다.

이행실적평가(§ 43· § 44)	내용
평가항목	납기·품질·수요기관 만족도·서비스·계약이행성실도
자료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시스템 저장 자료 활용, 일부 지표는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입력·평가
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의 4단계 (총점 100점 만점)
가점	심화교육 이수·전문자격 취득 시 가점 2점(총점 100점 초과 불가)

☞ SLA/SLM 과 PBSC

서비스수준관리(SLM)는 IT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계약 이행을 평가·관리하는 프로세스로, 지속적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활용 계약으로 **서비스 카탈로그**, **SLA**(서비스수준협약, 서명으로 법적 효력), **OLA**(내부 공급자 간 운영수준협약), **UC**(외부 공급업체와의 계약)가 있습니다.

성과기반응역계약(PBSC)은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용역 자체가 아니라 **성과 결과(Performance Outcomes)**를 구매합니다. ①측정 가능한 요구 성과 제시 ②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③**장기계속계약**으로 안정적 여건 도모가 특징이며,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수립하기 어렵고 확정계약을 선호하는 공공계약 문화에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1-3-⑤ 계약상 위험 관리

☞ 근거법령 · 구매관리 위험관리 일반이론(JIT·SCP)

경영환경이 스피드화·글로벌화·복잡화하면서 구매활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공급자에게 문제가 생겨 자재·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적기생산시스템(JIT)** 등 구매운영은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을 안습니다.

구매 이슈	실행 이유	발생 가능한 위험 원인
JIT 실행	재고감축·원가절감·낭비 제거	갑작스러운 환경변화 대처가 어려움
아웃소싱 증가	원가절감·핵심역량 구축	공급자 의존성 증가
구매의 글로벌화	글로벌 품질·원가·경쟁력 확보	글로벌 위험요소가 구매로 유입
경영의 인터넷환경	신속하고 빠른 경영	위험의 속도가 빨라짐

자재 공급이 중단 없이 흐르게 하는 것을 **SC(Supply Continuity)**, 외부 충격에도 공급이 지속되도록 하는 계획을 **SCP(Supply Continuity Planning)**라 합니다. 위험은 **발생확률·지속기간·영향도** 세 요소로 측정·분석하며, 대처는 예방 중심의 **사전적 방안**과 영향 최소화 중심의 **사후적 방안**으로 나뉩니다. 관리 방법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통제**와 다른 사람·조직과 함께 대처하는 **공유**가 있습니다.

1-3-⑥ 계약보증금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12·시행령 § 50· § 51· § 52·시행규칙 § 62· § 63 · 지방계약법 § 12 · 민법 § 565(계약금)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 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납부하는 물적 담보로, 법적 성격은 「민법」 상 **계약금과 유사하며 예정 손해배상액** 성격을 띕니다. 납부면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쟁·수의계약에서 낙찰자·계약상대자로부터 받습니다.

구분	내용
납부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장기계속은 제1차 부기 총금액의 10% 이상). 계약금액 증감 시 상응 금액 추가납부·반환
납부시기·방법	계약 체결 전까지 현금(자기앞수표 포함)·보증서 등.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종료일 이후
납부면제	공공기관·정부 50% 이상 출연 법인·농협·중기협동조합 등,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 관습상 부적합, 외자시설 부분품 구매 곤란 등(지급각서 제출)

시험포인트 — 국고귀속 vs 지체상금, 귀속·해지 순서

- **국고귀속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장기계속 2차 이후 미체결 시 국고귀속(지방계약은 세입 조치)
- **일부 불이행**: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귀속. 단, 분할 가능 계약의 기성·기납부분 인수분과 단가계약 이행완료분은 제외
- **지체상금과 병과**: 국고귀속(의무 **미이행** 전제)과 지체상금(기한 경과 후 **이행** 전제)은 근본이 다르므로, 불이행으로 국고귀속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 **순서**: 국고귀속(시행령 § 75) 후 해제·해지가 정당.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해제·해지 전 국고귀속
- **반환**: 이행 완료 시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 전체 이행 완료 전 기성부분 보증금은 반환 불가(장기계속은 연차별 완료분 반환)

✿ 쉽게 이해하기

이행관리는 '납품 잘 되나'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미이행·지연을 미리 눌러두는 담보가 **계약보증금**(위약금 성격, **계약금액 10% 이상**)이고, 늦게 내면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둘 다 발주기관의 **손해액 증명 부담**을 덜어주는 '예정 손해배상액' 성격이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암기: 이행실적평가 등급 = '최·우·보·미' 4단계**(100점 만점). SLA는 서명으로 효력, PBSC는 **성과(결과)**를 삼으로써 인센티브·페널티.

구분	국고귀속	지체상금
전제	의무 미이행	기한 경과 후 이행

⚠ **함정: 순서는 국고귀속(§ 75) → 해제·해지.** 보증채무 부종성 때문에 해지 전에 귀속.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하한은 **5,000만 원 이하**.

4

계약종결 관리

이 절의 핵심

계약종결은 **납품검사·검수 → 대금지급 → 종결 → 하자보증·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검수·시험은 구별되며, 대금은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합니다. 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입찰·계약·선금·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보험** 제도를 함께 다룹니다.

1-4-① 납품검사·검수 절차

☞ 근거법령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3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19 · 국가계약법 시행령 § 55 · 지방계약법 시행령 § 64

구분	정의	담당
검사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확인	검사공무원
검수	검사 통과 목적물이 손상·훼손 없고 계약서·납품서류상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	물품출납담당 공무원
시험	물리적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 변화·반응 등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	해당 시험기관

검사는 **품질·수량·포장·표기 상태·포장명세서·품질식별기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비용과 변형·소모·파손·변질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인증제품 등 일정 물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국민 생명·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면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사 기한은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경제위기 고시 시 7일)이며,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이 있으면 7일(7일 대상은 3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 조건부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소요 자재·인력·경비를 부담하고 계약금액의 **15% 범위**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제출합니다.

1-4-② 대금지급 절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58 · 물품계약 일반조건 § 22· § 22의2 · 조달청 구매업무처리규정 § 62· § 64 · 하도급법 § 2

계약상대자는 이행 완료 후 검사에 합격하면 **대금지급청구서**(하수급인 대금지급계획 첨부)를 제출해 대금을 청구합니다(시행령 § 58). 납품대가는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지급하며, 합의로 5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특약을 둘 수 있고, 불가항력 시에는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납품대가에서 공제할 금액

- ① 기성·기납부분 대가 지급액 · ② 선금잔액 · ③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④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시운전 미필 등) · ⑤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 명시 시)

대가 지급 지연 시에는 **지연이자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기성부분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공정하게 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합니다.

1-4-③ 계약종결 절차 (지체상금)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74·시행규칙 § 75 · 물품계약 일반조건 § 24 · 대법원 99다57126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판례는 그 성격을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대법원 99다57126). 부과 대상은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로서 납품(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지체상금 산정과 지체일수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 기납금액) × (지체일수 - 면제일수) × 지체상금률

납품기한 내 납품 시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불산입**하나, 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통과일까지 산입합니다. 기한 경과 제출 시에는 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 시 최종검사) 통과일까지 산입합니다. **면제 사유**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대체 불가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 발주기관 책임의 착수 지연·중단, 설계도서 승인 지연, 시험·검사기관 책임의 지연 등입니다.

1-4-④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

 근거법령 · 민법 § 567·§ 569~§ 584·§ 582 · 조달사업법 § 18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18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지우는 담보책임으로, 「민법」은 매매의 담보책임을 도급 등 유상계약에도 준용합니다(§ 567). 조달청장은 조달물자 사후관리를 수행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하자처리**입니다. 조달물자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과 성립요건·권리행사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조달물자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 등)
과실 여부	무과실책임 (고의·과실 불문)	원인·책임 있는 사유 판정 시 부담(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 면책 가능)
책임기간	매수인이 안 날부터 6월 (§ 582)	납품일(시운전 완료일)부터 계약서 특기사항 명시 기간(미명시 시 민법 6개월)
내용	하자추완·손해배상·계약해제·완전물급부 청구	하자보수 청구·물품대금 반환(감액)·하자보수보증금 귀속·대체납품 청구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조달물자계약의 하자담보책임도 특별한 **채무불이행책임** 성격으로 이해하며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하자를 야기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품질관리 특수조건 § 18제2항).

1-4-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선금보증금 등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37· § 50· § 52· § 53 · 국고금관리법 § 26·시행령 § 40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제22장 · 공사계약일반조건 § 10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하는 담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의 **입찰참가신청에** 같은 데 의의가 큼니다. 금액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며 (단가계약은 단가×최대 이행예정량×5%),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납부를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입찰은 입찰서에 포함).

💰 선금보증금(선금금)

선금은 확정된 채무의 지급기간 도래 전에 미리 전부·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임·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총당해 이행을 원활하게 합니다(국고금관리법 § 26).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34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의무지급률은 공사(20억 미만 50%·20~100억 40%·100억 이상 30%), 물품제조·용역(3억 미만 50%·3~10억 40%·10억 이상 30%) 등입니다. 채권확보를 위해 증권·보증서를 제출 (§ 35)하며,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 시험포인트 — 공사계약 이행보증 방법

공사계약은 두 가지 이행보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며, 계약 도중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금액 15% 이상 계약보증금 납부**(금전적 보증): 불이행 시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 국고귀속(보증시공 의무 없음)
- ② **계약금액 40% 이상 납부 보증 공사이행보증서(P-Bond) 제출**(역무적+금전적 보증): 1차 책임시공, 불이행 시 보증금액 국고귀속.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 시 50% 이상

공사이행보증서는 1997. 1. 1. 도입되었고 종합심사낙찰제·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는 ②의 방법으로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이행 개시는 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연장 가능)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목적물 등을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 53). 턴키·대안·기술제안입찰과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공사(교량·공항·댐 등 18개 공사)는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반영해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공자(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 주체**인 시공자 부보방식이 원칙입니다.

1-4-⑥ 지체상금 부과 (하자보수보증금 포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74·시행규칙 § 70(별표1)· § 75 · 조달청 품질관리 특수조건 § 18 · 조달청 구매업무처리규정 § 59의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내 납품하지 않으면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합니다(시행령 § 74). 이때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그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 성질별로 시행규칙 § 75에서 정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이행 완료 후 일정 기간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물품·용역은 원칙적으로 설정이 곤란하나, 현장 설치 물품 등 하자보수보증에 필요한 품목은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명시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목적물 특성(시행규칙 § 70 별표1)과 수요기관 의사를 고려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며, 납품일(시운전 완료일)부터 계약서 특기사항 명시 기간까지입니다.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완료 확인일**에 종료되며,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보수해야 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종결은 **검사→검수→대금→하자보증**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검사**는 규격대로 만들었나(검사공무원), **검수**는 수량 맞게 왔나(출납공무원)로 역할이 다릅니다. 대금은 검수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검사 기한은 이행완료 통지일부터 **14일 이내**가 핵심 숫자입니다.

🔑 **암기: 지체상금 = (계약금액-기납액) × (지체-면제일수) × 지체상금률**. 판례상 **손해배상액 예정**이라 귀책 입증 불요 (99다57126).

보증금	입찰	선금
비율	입찰금액 5% 이상	계약금액 70% 이내

⚠ **함정: 공사이행보증은 계약보증금 15% vs P-Bond 40%**(예가 70% 미만 낙찰 시 50%). 검사 5일이 아니라 **대금 5일·검사 14일**을 혼동 말 것.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1장)

- **계약 성격:** 공공계약은 대법원이 **사법(私法)계약**으로 봄. 계약자유(체결·상대방선택·내용결정·방식) + 국가계약법 § 5(신의성실·부당특약 무효)
- **성립요건 4:** 의사표시·이행가능성·법적사회적 타당성·확정성 / **계약 5대 기능:** 증거·관리·위험전가·지불·동기부여
- **착수:** 용역 14일, 공사 추정가격 10억 미만 10일·10억 이상 20일 이전 착공 / 하도급 통보 30일·검토 7일
- **계약금액 조정 3:** ①물가변동(**90일+3%** 동시충족, 조정기준일, 품목/지수조정률) ②설계변경(공사량 증감 수반) ③기타 계약내용 변경(공사량 증감 **미수반**, 실비)
- **단품 슬라이딩:** 특정 자재 **15% 이상** / 조정 청구·조정은 30일 이내
- **해제 vs 해지:** 해제=소급 실효(원상회복) / 해지=장래효(일정 시점부터). 사정변경 시 14일 내 대가·철수비 지급
- **분쟁해결:** 민사(소송·ADR:화해·조정·중재)·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헌법(헌법소원). 중재판정=확정판결 효력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성과관리:** 이행실적평가(납기·품질·만족도·서비스·성실도, 4등급) / **SLA·OLA·UC** / **PBSC**(성과 결과 구매·인센티브·페널티·장기계약)
- **보증금:** 계약보증금 **10% ↑** (위약금·예정손해배상) / 입찰보증금 **5% ↑** / 선금 **70%** 이내 / 공사이행보증 15% (금전)·40%(P-Bond, 역무+금전)
- **종결:** 검사(검사공무원)·검수(물품출납)·시험(시험기관) / 검사 14일·대금 5일 / 지체상금=손해배상 예정(귀책 입증 불요)=(계약-기납)×(지체-면제)×지체상금률
- **하자:** 민법 6월(무과실) vs 조달물자계약 특기사항 기간 / 손해보험 의무=턴키·기술제안·추정 200억 ↑ 공사

✅ 자가 진단

1. 계약의 자유 4가지 내용과 국가계약법 § 5의 부당특약 무효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계약 성립요건 4가지와 계약의 5대 기능을 말할 수 있는가?
3. 물가변동 조정의 두 요건(90일·3%)과 조정기준일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
4.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차이(공사량 증감 수반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가?
5.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 분쟁해결 수단(ADR)을 설명할 수 있는가?
6. 계약·입찰·선금·하자보수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 2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가?
7. 검사·검수·시험의 차이, 지체상금 산정식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객관식 (10문항)

1. 우리나라 대법원이 보는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법상 처분
- ②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
- ③ 행정행위
- ④ 형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
- ⑤ 조약

정답 · 해설

✓ 정답 ②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계약

대법원은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판결). 따라서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제5조가 이를 신의성실·부당특약 금지로 제한합니다.

2. 계약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의사표시
- ② 이행가능성
- ③ 법적·사회적 타당성
- ④ 확정성
- ⑤ 이윤 극대화

정답 · 해설

✓ 정답 ⑤ 이윤 극대화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계약의 성립요건은 의사표시·이행가능성·법적·사회적 타당성·확정성의 4가지입니다. 이윤 극대화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두 가지 요건을 옳게 짝지은 것은?

- ① 계약 체결 후 60일 경과 + 조정률 5% 증감
- ②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3% 이상 증감
- ③ 계약 체결 후 30일 경과 + 조정률 10% 증감
- ④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조정률 15% 증감
- ⑤ 계약 체결 후 120일 경과 + 조정률 3% 증감

정답 · 해설

✓ 정답 ②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3% 이상 증감(동시 충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는 계약 체결일(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하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최초의 날이 조정기준일입니다. 특정 자재의 15% 이상 변동은 단품 슬라이딩의 요건입니다.

4.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 ① 계약금액의 규모
- ② 공사물량(공사량)의 증감 수반 여부
- ③ 계약상대자의 국적
- ④ 지체상금 부과 여부
- ⑤ 보증금 납부 여부

정답 · 해설

✓ 정답 ② 공사물량 증감 수반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반드시 수반되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공사이행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따른 조정은 설계변경은 일어나지만 공사물량의 증감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양자의 차이입니다.

5.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제는 장래효만, 해지는 소급효가 있다.
- ② 해제는 소급해 효력이 소멸(원상회복), 해지는 일정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 ③ 해제와 해지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다.
- ④ 해지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
- ⑤ 해제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회복할 의무가 없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해제=소급 실효(원상회복), 해지=일정 시점부터 소멸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소급해 소멸하여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미 이행된 급부의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해지는 해지 이후 계약내용 부분만 효력을 잃는다는 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6. 계약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한다.
- ② 법적 성격은 「민법」 상 계약금과 유사하며 예정 손해배상액 성격을 띤다.
- ③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계약은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 해제·해지 중 해제·해지를 먼저 한 후 국고귀속함이 원칙이다.
- ⑤ 이행이 완료되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국고귀속을 먼저 한 후 해제·해지함이 정당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상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제·해지에 앞서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는 방법이 정당합니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입니다.

7. 납품 검사·검수·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수는 검사공무원이 수행한다.
- ② 검사는 물품출납담당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 ③ 검사는 계약서(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 ④ 시험은 검사공무원이 직접 화학반응을 측정한다.
- ⑤ 검수는 계약목적물의 성능을 시험기관에서 측정하는 절차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검사는 검사공무원이 계약서대로 제조·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검사공무원이 확인, 검수는 검사 통과품의 손상·수량을 물품출납담당 공무원이 확인, 시험은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절차입니다.

8. 판례가 보는 지체상금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 ① 위약벌이며 귀책사유 입증에 필요하다.
-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귀책사유 입증에 요하지 않는다.
- ③ 계약금과 동일하다.
- ④ 부가가치세의 일종이다.
- ⑤ 선금금과 동일하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귀책사유 입증 불요

판례의 일반적 관점은 지체상금의 성격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며,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대법원 99다57126 등).

9.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계약금액 10% 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20%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한다.
- ② 계약금액 15% 이상 계약보증금(금전적 보증) 또는 40% 이상 공사이행보증서(역무+금전) 중 선택한다.
- ③ 공사이행보증서는 금전적 기능만 있다.
- ④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는 반드시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으로 한다.
- ⑤ 이행보증 방법은 계약 도중 변경이 전혀 불가능하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15% 계약보증금 또는 40%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공사계약은 계약금액 15% 이상 계약보증금 납부(금전적 보증)와 40% 이상 납부 보증 공사이행보증서(P-Bond, 역무적+금전적 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며, 계약 도중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10. 성과기반용역계약(P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역 자체가 아니라 성과 결과(Performance Outcomes)를 구매한다.
- ② 성과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 ③ 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다.
- ④ 측정 가능한 요구 성과를 명확·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⑤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수립하기가 매우 쉬워 확정계약 문화에 잘 맞는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성과지표의 객관적 수립이 어렵고 확정계약 문화에는 적용이 어렵다.

PBSC는 성과 결과를 구매하고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하며 장기계약을 체결하지만,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수립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확정적 계약내용을 선호하는 공공계약 문화 환경에서는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OX (5문항)

11. 「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무효이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제4항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정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부당특약 무효는 2019. 11. 26. 신설).

12.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13. 중재판정은 양측 당사자에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을 가진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구속력)이 있으므로(중재법 § 35),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는 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14. 납품대가는 검사·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납품대가는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하며, 합의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 22· § 22의2).

15.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조달물자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 ✕)

정답 · 해설

정답: ○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나,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인·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정받은 경우 하자처리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PART 3 · 제2장

물품 계약관리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3 · 필기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

제2장 「물품 계약관리」는 **물품(제조·구매)의 입찰절차와 낙찰자결정방법, 계약 이행관리**를 다루는 장입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공고서 작성, 다양한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협상·경쟁적 대화·2단계 경쟁입찰·종합낙찰제 등), 소액수의계약과 외자구매계약, 그리고 계약 체결·보증·검사·대금지급·지체상금에 이르는 **물품계약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익힙니다.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제조·공급)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의의와 등록 서류·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물품구매 입찰공고서**의 의의·법적 성격과 명시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물품구매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협상·경쟁적 대화·2단계 경쟁입찰·종합낙찰제 등)을 구분할 수 있다.
- **소액수의계약**과 **외자구매계약**의 절차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물품계약의 **이행관리**(계약 체결·보증·검사·대금지급·지체상금)를 설명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Keywords)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공고(Bid Process for Goods) · 낙찰자결정방법(Selection Methods) · 적격심사낙찰제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 · 2단계 경쟁입찰 · 종합낙찰제 · 희망수량 경쟁입찰 · 소액수의계약 · 외자구매(인코텀즈 · 신용장) · 계약보증금 · 검사·검수 · 대금지급 · 지체상금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2-1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 2-2 물품계약 이행관리 (법조문→해설→도식→사례)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2-1

물품계약 일반절차 관리

이 절의 핵심

물품계약의 일반절차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공고서 작성 → 낙찰자결정**으로 이어지며, 경쟁이 곤란한 경우 **소액수의계약**,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는 물자는 **외자구매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낙찰자결정방법은 적격심사낙찰제를 기본으로 협상·경쟁적 대화·2단계 경쟁입찰·종합낙찰제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2-1-① 물품(제조·공급) 입찰참가자격 등록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15(입찰참가자격의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산업집적활성화법 · 판로지원법

행정청에서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 공적 기관에 비치된 특정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 법적 효과는 ① 효력 발생(특허권 등)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저작권 등) ③ 면허 부여(의사 등) ④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선박 등)으로 구분되는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은 ④(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물품 제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해 증명하는 서류**(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확인·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제출·확인 서류(요지)
물품제조·구매등록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증명서류(필요시) / (제조인 경우)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 서류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조달 이용 시 제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만)
등록증 교부·게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게재 →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한 것으로 봄

등록 정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에 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이 구체적 절차를 정합니다. 조달청 고시 제4조는 등록 분야를 **물품·공사·용역·외자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으로 구분하며, 물품 등록은 **제조와 공급**으로 나뉩니다.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에서 제조물품의 품명을 등재하려면 **직접생산증명**을 하고 등재할 물품의 **품명번호(물품목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2-1-② 물품구매 입찰 공고서 작성 및 검토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8(입찰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 33· § 36 · 국가계약법 시행령 § 12(입찰참가자격)· § 1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판로지원법

💡 입찰공고의 의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서 등의 형태로 작성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입찰공고라 합니다(「국가계약법」 § 8). 법적 성격은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 간의 **의사 합치 과정**으로서 입찰 집행·계약 체결과 관련해 **우선적 효력**을 지니며, 계약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공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입찰참가자에게 **직접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공고 방법은 경쟁에 부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공고하며(필요시 국가기관은 일간신문, 지자체는 홈페이지 병행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 33), 명시할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 명시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 36 요지)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개찰 장소와 일시 / 입찰참가자의 자격 /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 **낙찰자결정방법**(낙찰자통보예정일 포함) / 계약 착수일·완료일 / 계약조건 공시 장소 / 입찰무효 사항 / 서류 열람·교부 장소 및 비용 / 전자·우편 입찰서 제출 방법 / 공동계약 허용 여부·이행방식 / 입찰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 예정가격 결정 관련 재료비·노무비·경비 기준 등 / 기타 필요사항

공고서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입찰참가자격(일반경쟁)**: 보안측정 적합판정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교부자,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자격요건 충족자(물품은 식품위생법·약사법 등에 의한 제조업 등록자 등)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12). 다른 법령상 면허 등이 없는 물품은 제조자·공급자 제한 여부에 따라 참가자격이 부여되며,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으로 조회·제한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의 난이도·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사회적 신인도·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1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이 물품·공사·용역별로 자격을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③ **입찰공고서 작성**: 등록 정보를 활용하되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입찰유의서)**을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근무시간 이후 신청분은 다음 근무일 오전 9시 접수 처리, 등록규정 § 18).

⚠️ 자격을 갖춰도 입찰할 수 없는 경우

① 「국가계약법」 § 27의5 및 시행령 § 12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관련 서약서 제출, 허위 판명 시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② 「국가계약법」 § 27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시스템상 투찰 제한으로 공고서 생략 가능).

④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조달 대상 물품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대상이거나 1,000만 원 이상 소액수의·보훈단체·사회복지법인·중증장애인생산시설 수의계약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을 공고에 포함합니다. 제한경쟁 대상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한편 일반제품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1억 원이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1억 원 미만이면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조달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시행령」 § 2의2).

2-1-③ 물품구매 낙찰자결정 방법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42(적격심사) · § 43(협상) · § 43의3(경쟁적 대화) · § 18(2단계) · § 17(희망수량) · § 25(유사물품) · § 47의2(시범특례)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낙찰자결정방법 개관

물품구매(제조)의 낙찰자결정은 **적격심사낙찰제**를 기본으로,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 규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우면 **2단계 경쟁입찰**, 품질·에너지효율을 종합 고려하면 **종합낙찰제**, 다량물품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1) 적격심사낙찰제는 국고 부담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42). 최저가격자를 곧바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평가**하므로 발주기관에 재량이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덤핑 입찰 낙찰을 예방**합니다.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95년 7월** 도입되었고,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으며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시행합니다.

구분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평가 기준	가격 위주	가격 + 계약이행능력 종합
발주기관 재량	거의 없음(최저가=낙찰자)	계약이행능력 심사로 재량 있음
취지	가격경쟁	부실 이행 방지·신뢰성 확보

적격심사에서는 입찰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일정 수준(예: 예정가격의 88%) 미만은 오히려 가격점수를 체감**시켜 저가경쟁에 따른 부실을 방지합니다. 예컨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는 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5+기술능력10+경영상태30=45점) 만점 시 커트라인 85점을 충족하는 입찰가격 점수 40점의 낙찰률이 95.5%와 80.5%이며, 그중 하한선은 **80.5%(80.495%)**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부터 5일(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물품 제조·구매는 3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합니다.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요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5점 미만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심사 포기 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85점 이상 중 **최고점수자**(이외에는 추첨)로 결정합니다. 재공고입찰에서도 유찰돼 수의계약할 때는 적격심사 없이 **가장 유리한 가격 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격제도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전에 **부정당업자 제한·영업정지·입찰 무효·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적격심사기준」 § 9의2). 공동계약을 허용한 입찰이어야 하고, 일부 구성원에게만 결격사유가 있으면 남은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해 재심사합니다. **신인도**는 기본 총점 외에 추가되는 가감점 항목으로, 중소·여성·장애인

·창업기업 지원 등 **공공조달의 정책적 활용 수단**이며 기술·품질 우수, 정책 부응 기업에 가점을, 계약지체·불공정하도급·하자조치 불이행 등에는 감점을 부여합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 안전성 등이 요구될 때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작성 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협상 적격자 선정),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40일 전**(긴급·고시금액 미만·재공고는 10일 전)에 공고합니다.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변별력 확보가 어려우면 **차등점수제**를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물품·용역(단순노무·단순물품구매 제외)과 **지식기반사업**(엔지니어링·정보통신·정보화·산업디자인·문화산업 등)입니다.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과업 규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입찰 참여 업체와 협의로 세부 내용을 조정·확정한 뒤 최적 공급기업을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으로 **2019년 신설**되었습니다. 첨단기술·복잡한 용역 등 규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화와 경쟁을 병행하며, 입찰공고 후 **2회 이상 대화**로 과업을 확정하고 최종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기본 제안서 평가로 **참여적격자를 2인 이상** 선정하고, 최종 제안서 평가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합산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되지 않은 참여자에게는 전체 사업예산의 **1,000분의 15** 범위에서 참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도	핵심 특징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확정 후 제안서 평가+협상, 지식기반사업 등, 40일 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경쟁적 대화	규격 미확정 → 2회 이상 대화로 과업 확정(2019 신설), 참여비용 지급 가능
2단계 경쟁입찰	기술(규격)입찰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 규격 작성 곤란 시
규격·가격 동시입찰	기술·가격 입찰을 별도 봉투로 동시 제출, 규격 적격자만 가격 개찰

4) 2단계 경쟁입찰(Two Stage Bid System)은 물품·용역계약에서 먼저 **기술(규격)입찰**을 시행한 뒤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규격 작성이 곤란하거나 한 번의 입찰이 부적합할 때 사용합니다. **규격·가격 동시입찰(Two Envelope Bid System)**은 기술·가격 입찰서를 각각 다른 봉투에 넣어 동시 제출한 뒤 규격 적격자만 가격입찰을 개찰하는 방식이며, 2인 이상 유효입찰이면 성립하므로 규격 적격자가 1인이어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42제3항).

5) 종합낙찰제(물품)는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찰가격 외 품질·성능·효율**을 종합 고려해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저에너지제품 개발을 유도합니다. 2000년 이후 각 발주기관이 대상 품목·결정방법을 정하며, 조달청은 훈령으로 세부기준을 운용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냉동기·공기압축기·송풍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은 총에너지 소비비와 입찰금액을 합산한 **최저 금액자**를, **환경우월성 기준 적용제품**(에어컨·세탁기·LCD모니터·데스크탑 등)은 가격·성능·환경 환산점수의 **종합평가점수 최고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희망수량 경쟁입찰(다량물품 입찰)은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구매할 때 수량 범위에서 입찰자가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해,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은 단가 중 **최저가격부터 순차**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17). 예정가격은 **단가로 작성**하며, 동일가격이면 **수량을 많이 제시한 자**(수량도 같으면 추첨)를 낙찰자로 합니다. **7)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은 제조자별 규격이 달라도 수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물품을 지정해 가장 경제적 가격 입찰자를 선정해 **독점 수의계약의 고가구매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8) 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은 일반적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한 혁신적 물품·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절차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2022년 9월 15일** 시행되었으며, 시범특례 유효기한은 정한 날부터 **2년 범위**입니다.

2-1-④ 소액수의계약 절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30 · 전자조달법 § 7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10의2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긴급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생산자 1인 등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신제품·우수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하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단체 등과 계약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운용합니다.

구분	소액수의계약 방식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으로 수의계약 가능(필요시 2인 이상 견적도 가능)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 으로 소액수의계약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조합)·마을기업 등	물품 구매·제조 계약은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 으로 수의계약 가능

절차는 ① **안내공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3일 이상** (공휴일·토요일 제외) 기간을 두고 안내공고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30제3항). 필요시 견적제출 자격을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0제4항). ② **견적서 제출**: 전자조달 이용자는 전자적 형태의 견적서를 제출합니다(「전자조달법」 § 7). ③ **개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④ **수의계약 진행**: 배제 사유 판단을 위해 각서를 요청하며,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 시 차순위자 순으로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 사유(요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10의2)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확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담합·서류 위조·허위 제출·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응·포기서 제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수의계약 배정에서 배제됩니다.

2-1-⑤ 외자구매계약 절차

☞ 근거법령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 8 · 인코텀즈(INCOTERMS) 2020 ·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용역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조달청은 「외자입찰유의서」, 「외자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지침」 등을 제정·활용합니다. 외자구매는 국제무역을 이용한 외국산 물품·용역을 직접 구매한다는 점에서 내자구매와 다르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자구매의 주요 특징

- ①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를 거쳐 규격 적합자 중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자(bidder)와 공급자(supplier)** 모두를 의미하며 연대책임 부담(공급자 1인+다수 입찰자 참가는 1인 1입찰 원칙 위배 아님)
- ③ 국제입찰은 입찰기일 **40일 전** 공고(긴급·적기 조달 곤란 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 10일 전 가능)
- ④ 통화·보증금·신용장 대가지급·검수 등에 **국제상관례** 적용 가능
- ⑤ 신용위험·환위험·불가항력적 위험 등 다양한 위험 내포 / ⑥ **적화보험** 가입 가능 / ⑦ 원칙 한국어, 영어 병행 사용 가능

가격조건은 인코텀즈 2020의 인도조건(FCA·FOB·CFR·CPT·CIP·DAP·DPU·DDP 등)을 대부분 적용하며, 국내 공급 물품에는 인코텀즈에 없는 **수요기관 지정 장소(DTE)**를 활용합니다. **결제 방식**은 ① **외화결제**(상업신용장 개설, 국외 공급자가 선적 후 선하증권·상업송장 등을 매입은행 통해 개설은행에 송부하면 신용장 조건 일치 검토 후 대금지급, UCP600 적용), ② **원화결제**(물품 인수 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 ③ **외화·원화 혼합결제**로 구분됩니다.

외자구매 절차(조달청 조달요청건, 요지)

- ① 조달요청(나라장터 G2B) → ② 구매규격 사전공개(7일, 긴급 3일)·검토 → ③ 구매결의(공고규격 확정·계약방법 결정) → ④ 입찰공고 → ⑤ 입찰보증금 적립(100만 달러 이상 등, 총입찰금액 5% 이상) → ⑥ 입찰서 제출 → ⑦ 개찰 → ⑧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수요기관 단독 원칙) → ⑨ 낙찰자 선정(규격적합자 중 최저가)·계약 체결 → ⑩ 신용장 개설 신청·적화보험·운송지시 → ... → ⑫ 선적(납품) → ⑬ 물품대금 적립·지급 → ⑭ 운송·통관·지정장소 인도 → ⑮ 물품인수·무하자 인수 통보 → ⑯ 계약 종결.

쉽게 이해하기

물품계약은 **사고 → 규격 맞춰 만들고 → 넘겨받기**가 핵심이라, 절차가 정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늘 **자격 등록 → 공고 → 낙찰자 결정** 순서고, 경쟁이 안 되면 **소액수의**, 국내에 없으면 **외자구매**로 선풍이 납니다. 낙찰방법이 여러 개인 이유는 '물건 성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규격이 뚜렷하면 값으로 겨루고(적격심사), 만들기 나름이면 아이디어로 겨루고(협상·경쟁적 대화), 규격조차 못 정하면 규격부터 거른 뒤 값을 봅니다(2단계).

암기: 낙찰방법 = '적·협·경·2·종·희' (적격심사·협상·경쟁적대화·2단계·종합낙찰·희망수량)

기준 숫자	값
적격심사 종합평점 합격선	85점 이상
10억 ↑ 제조 낙찰하한	80.5%
협상 공고	40일 전(긴급 등 10일)
소액수의 견적	2천만 ↓ 1인 / 2천만~1억 2인 ↑

⚠ 합정: 물품 적격심사 합격선은 '85점'입니다. 공사(95점)나 다른 자료의 '92점'과 헷갈리지 마세요. 또 경쟁적 대화는 협상과 달리 규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 '2019년 신설' 제도이고, 시범특례는 2022.9.15 시행·유효기한 2년입니다.

2-2

물품계약 이행관리

이 절의 핵심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 체결 → 계약이행보증 → 검사(검수) → 대금지급**으로 이행이 진행되며,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지체상금(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물품계약은 **요식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이 원칙이며, 검사·대금지급·지체상금에는 각각 엄격한 기한과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2-2-① 공정, 품질 및 안전관리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11(계약서 작성) · § 5(청렴계약) · 전자조달법 § 9 · 국가계약법 시행령 § 55(검사기한)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사업법 § 3의3

1)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지체상금 등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확정됩니다(「국가계약법」 § 11). 정부계약은 「민법」과 달리 **요식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이 원칙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5,000만 원 이하 계약**, 경매에 부치는 경우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을 체결하며(「국가계약법」 § 5의2), 위반 시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계약문서 구성(「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계약서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특수조건 / 규격서 / 산출내역서 — 상호보완의 효력. 단, 특수조건이 법령·일반조건에 반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면 그 내용은 효력 없음(「국가계약법」 § 5)

전자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담당자가 초안을 전송 → 계약상대자 수용·응답 → 계약담당자가 계약번호·계약일자 입력·전송 → 계약상대자 수신 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전자조달법」 § 9).

2) 계약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귀속**되는 금액으로,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채무불이행 손해를 담보하며 채권자의 증명 곤란을 해소합니다. 원칙적으로 **위약금(예정 손해배상액)의 성격**을 띠어 발주기관은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담보 범위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선금금반환 의무, 지체상금**이 포함됩니다. 보증목적(계약 이행 완료)이 달성되면 계약상대자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며(「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53), 국고귀속 시 원칙적으로 **미지급 기성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51제4항).

3) 검사(검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를 검사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고, **검수**는 검사 합격품이 손상·훼손 없이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물품출납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물리적 기능·성능이나 화학적 변화를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으로 그 성적은 검사에 활용됩니다.

항목	내용
검사기한	이행 사실을 서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상대자 입회하여 검사(불가항력 시 사유 존속 기간+소멸일부터 3일 연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 55)
검사 면제	KS표시품(산업표준화법 § 15),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ISO인증품), 조달청장 고시 품질관리능력 적합자 제조물품 등(인명·화재 우려 시 예외)
검사의 종류	① 조달청 검사 ② 전문기관 검사 ③ 수요기관 검사
납품일자	납품기한 내 검사 요청·합격 시 검사요청일 , 기한 후 요청 또는 기한 후 보완조치 시 최종검사합격일 이 납품일자

검사 결과 계약내용이 위반·부당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 19).

2-2-②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58(대가 지급) · 물품계약 일반조건 § 22 · 국가계약법 시행령 § 74(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75(지체상금률)

💡 이 항의 핵심

물품계약의 **계약금액과 관련한 이행관리**는 검사·검수 완료 후의 **대금지급**과, 이행 지체 시의 **지체상금(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 부과로 나타납니다. 각각 지급기한과 지체일수 산정·면제 기준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1) 대금지급: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물품납품서·영수증 등을 첨부해 **대가지급청구**를 하면, 발주기관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즉시 보완을 요청합니다. 납품대가는 검사·검수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 연장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지급할 수 없으면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 22).

대금지급 관련 사항	내용
대가지급 대상액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지연 이자상당액을 가산(기성대가는 선금 정산액만큼 공제 후 지급)
기성부분 대가	계약수량·이행전망·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
하도급대금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 지급 내역을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발주기관에 통보

2) 지체상금(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계약서에 정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판례는 그 성격을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부과 대상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계약상대자**입니다.

지체상금률(물품)	비율
국가계약(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75(「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75)
지방계약 지연배상금률(물품 제조·구매)	1,000분의 0.8 / 설계·제조 일괄 및 지자체장 승인 필요 물품은 1,000분의 0.5

지체일수 산정은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납품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를 산입합니다. 납품기한을 경과해 제출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 합격일까지 산입합니다. 지체상금은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해 산출하며, 검사를 거친 **기납 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상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 74).

♡ 지체상금 면제 사유(요지, 「물품계약 일반조건」 § 24제3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폭풍·홍수·전쟁·화재·전염병·폭동 등) ▶ 대체 불가한 중요 **관급재료 공급 지연**으로 제조공정 진행 불가 ▶ 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 착수 지연·중단** ▶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승인 지연** ▶ 시험·검사기관 책임으로 **시험·검사 지연** ▶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제작기간 지연 ▶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 이러한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쉽게 이해하기

낙찰 뒤 이행은 **도장 찍고(체결) → 보증금 걸고(보증) → 물건 확인하고(검사) → 돈 주기(대금)** 순서로 흘러갑니다. 정부계약은 말로만 하면 안 되는 **요식계약**이라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써야 성립합니다. 계약보증금은 '이만큼 손해 볼 것'이라 미리 정해둔 **위약금(예정 손해배상액)**이라, 발주기관은 실제 손해액을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이행 안 한 사실만 보이면 됩니다. 지체상금도 같은 논리라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 없습니다.

🔑 **암기: 이행 4박자 '체·보·검·대' / 기한은 검사 14일 · 대금 5일 · 하도급 15일 · 기성 30일마다**

구분	물품 지체상금률
국가계약(제조·구매)	1,000분의 0.75
지방계약(지연배상금)	1,000분의 0.8

⚠ **합정: 지체상금은 판례상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 손해배상액'입니다(귀책 입증 불요).** 계약서 생략은 5,000만 원 이하 등 예외일 뿐 원칙은 작성입니다. 불가항력·관급재료 지연·발주기관 책임 지연 등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2장)

-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록의 법적 효과 중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④)**’에 해당 / 물품 제조등록은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 서류 필요 / 나라장터 게재 시 다른 중앙관서에도 등록한 것으로 봄
- **입찰공고**(「국가계약법」 § 8): 우선적·직접적 효력 / 명시사항은 시행령 § 36(낙찰자결정방법·입찰보증금·자격 등)
- **적격심사낙찰제**(1995.7 도입): 최저가부터 계약이행능력 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 낙찰 / 10억 이상 제조 낙찰하한 80.5% / 수의계약 미적용
- **협상(40일 공고·제안서평가위)** / **경쟁적 대화(2019 신설·2회 이상 대화)**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 **종합낙찰제(품질·성능·효율)** / **희망수량(단가·수량 입찰)** / 유사물품복수경쟁 / 시범특례(2022.9.15)
- **소액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 2,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물품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
- **외자구매**: 국내 미생산·차관 물자 / 국제입찰 40일 전 공고 / 인코텀즈 2020·국내 DTE / 외화(신용장·UCP600)·원화·혼합 결제 /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요식계약, 낙찰통지 후 10일 이내, 5,000만 원 이하 계약서 생략 가능 / **계약보증금=위약금**(예정 손해배상), 지체상금·원상회복·선금금반환 담보, 미지급 기성금 상계 원칙 금지
- **검사(14일 이내)**·검수·시험 / 검사 면제(KS·ISO·조달청 품질관리 적합) / 조달청·전문기관·수요기관 검사
- **대금지급**: 청구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 기성 30일마다, 하도급대금 15일 이내
- **지체상금**: 예정 손해배상액(위약별 아님) / 물품 국가 **0.75/1,000**, 지방 0.8/1,000 / 불가항력·관급재료 지연·설계변경 등 면제

✅ 자가 진단

1.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법적 효과와 물품 제조등록 서류를 설명할 수 있는가?
2. 입찰공고의 의의·법적 성격과 시행령 § 36 명시사항을 말할 수 있는가?
3. 적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의 차이, 85점·낙찰하한을 설명할 수 있는가?
4. 협상·경쟁적 대화·2단계 경쟁입찰·종합낙찰제·희망수량을 구분할 수 있는가?
5. 소액수의계약 금액구간별 견적방식과 외자구매 결제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가?
6. 계약보증금 성격·담보범위, 검사기한, 대금지급기한, 지체상금률을 말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객관식 (10문항)**

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이 지니는 법적 효과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특허권 등)
- ② 제3자에게 대항요건이 생기는 것(저작권 등)
- ③ 면허를 부여하는 것(의사 등)
- ④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이 되는 것(선박 등)
- ⑤ 등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정답 · 해설

✓ 정답 ④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

등록의 법적 효과는 ① 효력 발생 ② 대항요건 ③ 면허 부여 ④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으로 구분되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은 ④(선박 등과 같이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물품 제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필요한 서류로 본 교재가 특히 강조한 것은?

- ① 납세증명서
- ②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 서류
- ③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정답 · 해설

✓ 정답 ② 제조등록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물품 제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 12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판로지원법」 § 2제8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미확인 시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단순 홍보 행위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 ②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 합치 과정으로 우선적·직접적 효력을 지닌다.
- ③ 낙찰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입찰참가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④ 계약이 체결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공고 내용은 법령보다 우선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입찰공고는 우선적 효력을 지니며 입찰참가자에게 직접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입찰공고(「국가계약법」 § 8)는 발주기관과 입찰참가자 간 의사 합치 과정으로서 입찰 집행·계약 체결과 관련해 우선적 효력을 지니며, 계약법령 규정 사항을 공고서에 반영함으로써 입찰참가자에게 직접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4. 적격심사낙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고 부담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다.
- ② 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③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5년 7월 도입되었다.
- ④ 특정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⑤ 일정 수준 미만의 저가 입찰은 가격점수를 체감시킨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적격심사낙찰제는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격심사낙찰제는 국고 부담 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자를 심사·결정하는 제도이므로 특정인 간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본 교재상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제조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로 옳은 것은?

- ① 88.0%
- ② 89.995%
- ③ 80.5%(약 80.495%)
- ④ 95.5%
- ⑤ 91.75%

정답 · 해설

✓ 정답 ③ 10억 원 이상 제조의 낙찰하한선은 80.5%(약 80.495%)이다.

물품납품이행능력 만점(45점)에 커트라인 85점을 충족하는 입찰가격 점수 40점의 낙찰률은 95.5%와 80.5%이며, 그중 하한선은 80.5%(소수점 반올림 시 80.495%)입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19년에 신설된 문제 해결형 계약이다.
- ② 경쟁적 대화는 과업 규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2회 이상 대화로 과업을 확정한다.
- ③ 2단계 경쟁입찰은 가격입찰을 먼저 하고 기술입찰을 나중에 한다.
- ④ 종합낙찰제는 오직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총액으로만 낙찰자를 결정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경쟁적 대화는 규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2회 이상 대화로 과업을 확정한다.

①은 경쟁적 대화(2019 신설)에 대한 설명이며 협상은 규격 확정 후 제안서 평가·협상 방식입니다. ③ 2단계는 기술(규격)입찰 후 가격입찰 순서입니다. ④ 종합낙찰제는 가격 외 품질·성능·효율을 종합 고려합니다. ⑤ 희망수량은 단가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소액수의계약의 견적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으로 진행한다.
- ③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물품 구매·제조 계약을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다.
- ④ 안내공고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3일 이상 기간을 뒤야 한다.
- ⑤ 1억 원을 초과하는 계약도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소액수의계약은 1억 원 이하 계약 건에 대해 가능하다.

본 교재는 1억 원 이하 계약 건을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2,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으로 진행하며,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물품 5,000만 원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8. 외자구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용역이다.
- ② 국제입찰에 부칠 때는 원칙적으로 입찰기일 40일 전에 공고한다.
- ③ 외화결제 계약에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을 적용한다.
- ④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 없이 무조건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⑤ 국내 공급 물품에는 인코텀즈에 없는 수요기관 지정 장소(DTE)를 활용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외자구매는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를 거쳐 규격 적합자 중 최저가(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외자구매는 발주기관 구매규격·조건과 입찰규격·조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한 뒤, 규격을 갖춘 자 중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 검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9. 물품계약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위약벌의 성격을 띠어 실제 손해액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 ② 담보 범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선금금반환, 지체상금이 포함된다.
- ③ 국고귀속 시 언제나 미지급 기성금과 상계처리해야 한다.
- ④ 보증목적이 달성되어도 반환하지 않는다.
- ⑤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게 언제나 국고에 귀속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계약보증금 담보 범위에는 원상회복 의무·선금금반환·지체상금이 포함된다.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위약금(예정 손해배상액)의 성격을 띠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범위에 원상회복·선금금반환·지체상금이 포함되며, 국고귀속 시 원칙적으로 미지급 기성금과 상계할 수 없고, 보증목적(이행 완료) 달성 시 반환합니다.

10. 물품계약의 검사·대금지급·지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이행 사실을 서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행한다.
- ② 납품대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 ③ 물품 제조·구매의 국가계약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0.75이다.
- ④ 판례는 지체상금을 위약벌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을 요구한다.
-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판례는 지체상금을 예정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귀책사유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판례의 일반적 관점은 지체상금의 성격을 위약벌이 아니라 예정 손해배상액으로 보며, 위약벌적 성격이 아니므로 귀책사유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머지 검사기한(14일)·대금지급(5일)·지체상금률(0.75/1,000)·불가항력 면제는 옳습니다.

OX (5문항)

11. 나라장터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15).

12.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원칙적으로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40일 전에 공고하며, 긴급·고시금액 미만·재공고입찰의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13. 종합낙찰제는 입찰가격만을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종합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입찰가격 외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4. 정부계약은 「민법」과 달리 요식계약으로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정부계약은 불요식계약을 인정하는 「민법」과 달리 요식계약으로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 5,000만 원 이하 계약, 경매 등)를 제외하고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15. 납품기한 내에 물품(검사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납품기한 내에 물품과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납품한 경우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 검사에서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물품계약 일반조건」 § 24).

PART 3 · 제3장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3 · 필기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

제3장 「용역·다수공급자 계약 관리」는 **용역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두 축으로 다룹니다. 앞부분은 용역의 정의·분류부터 입찰방식·계약절차·낙찰자 결정방법·이행관리까지 용역계약의 전 과정을, 뒷부분은 2인 이상과 미리 계약해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골라 사는 **MAS·2단계경쟁·카탈로그계약·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단계적으로 익힙니다.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의 정의 및 분야별 분류체계(기술용역·일반용역)를 이해할 수 있다.
- 용역계약(입찰) 방법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용역이행 및 계약관리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개념과 운영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2단계경쟁의 개념과 운영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카탈로그계약 및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개념과 운영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Keywords)

용역(Service) · 입·낙찰 프로세스(Bidding process) · 계약(Contract) · 용역이행 및 계약관리 · 다수공급자계약(MAS, Contract with multiple suppliers) · 2단계경쟁(Second stage competition) · 카탈로그계약(Catalog contracts)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Digital service catalog contracts)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3-1 용역계약 절차 및 이행관리 / 3-2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및 이행관리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3-1

용역계약 절차 및 이행관리

이 절의 핵심

용역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지방계약은 학술용역 추가)으로 나뉩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4가지, 일반용역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 4가지입니다. 계약절차는 **수요발생→조달요청→규격검토·사전공개→입찰공고→입찰·개찰→낙찰자 선정→계약체결→착수·이행→검사·검수→대금지급→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3-1-① 용역 입찰공고문 검토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조달사업법 · 판로지원법 ·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用役)이란 ①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②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외 기능하는 노동 ③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OECD는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새로운 기술과 인적자본 투입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을 용역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용역계약은 물품의 납품이나 공사와 달리 **노무·기술·연구·정보처리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으로, 결과물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과정의 품질관리·성실성**이 중요시되며, 결과 산출의 형태가 **비물질적이거나 기간·성과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는 기술용역·일반용역·**학술용역**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근거 법령
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일반용역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

기술용역·일반용역의 분야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야
기술용역	① 건설기술용역 ②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의한 기술용역(엔지니어링 활동) ③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일반용역	① 정보화사업용역 ②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건물관리·청소·경비·조경 등) ③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④ 장비 유지·보수 용역 ⑤ 폐기물처리 용역 ⑥ 육상운송 용역 ⑦ 학술연구 용역 ⑧ 광고 및 디자인 용역 ⑨ 보험 용역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규율되며, 조달청은 세부기준을 조달청 지침으로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거 법령	기관
기본법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각 시행령·시행규칙)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특별법	조달사업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입찰유의서·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조달청

✦ 시험 포인트

기술용역의 근거법 6개(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와 **일반용역=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이라는 정의, 지방계약에서만 **학술용역**을 별도 구분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3-1-② 제안서 작성 (계약 종류·입찰방식)

☞ 근거법령·국가계약법 § 7·지방계약법 § 9·국가계약법 시행령 § 21·§ 23·§ 24·§ 26·지방계약법 시행령 § 20·§ 22·§ 25

용역계약의 종류는 **계약금액 산정 여부·계약금액 확정 여부·계약기간·계약상대자 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기준	종류	내용
계약금액 산정	총액계약	계약목적물 전체를 총액으로 체결
	단가계약	일정 기간 계속 필요 시 단가(單價)에 대해 체결(일반단가·제3자를 위한 단가·MAS·카탈로그계약 포함)
계약금액 확정	확정계약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통상적 방법
	개산계약	미리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으로 체결(개발시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 용역, 위탁·대행, 긴급재해복구 등)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입찰 전 예정가격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	단년도계약	당해 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장기계속계약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 체결(총 낙찰금액 명기)
	계속비계약	계속비로 예산 편성하여 낙찰 총액에 대해 체결(연차별 금액 명기)
계약상대자 수	단독계약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공동계약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부적절한 경우 제외하고 가능한 한 허용)

용역계약의 입찰방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입찰 참여를 위한 제안서·입찰서 준비의 전제로 각 방식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방식	설명	근거·특징
① 일반경쟁입찰	불특정 다수 입찰희망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입찰방식의 기본원칙)	국가계약법 § 7·지방계약법 § 9 / 참여제한 없음, 경쟁 극대화
② 제한경쟁입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자격(수행실적·기술보유·지역 등)을 제한하여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 21·지방계약법 시행령 § 20 / 특수기술 요구·지역제한·중소기업자간 경쟁
③ 지명경쟁	특정 다수의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 23~§ 24 / 특수설비·기술·실적 보유자 아니면 곤란한 경우(입찰대상자 10인 이내) 등
④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 상대를 선정해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31 / 특수목적·유찰 등 예외적 인정

■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의 세부 요건

- **제한경쟁(실적제한)**: 규모·양에 따른 때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계약에 한해 계약목적물 규모·양의 **1배 이내** (지방계약은 원칙 1/3 이내, 특성·안전성·난이도 등 고려 시 1배까지), 금액에 따른 때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 **지역제한**: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용역 국가기관 **2억 3천만 원**)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현장·납품지가 속한 시·도 관할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합니다(지자체는 건설기술·설계·공사감리·엔지니어링 3억 3천만 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1억 5천만 원).
- **중소기업자 간 경쟁**: 중기부장관 지정·고시 용역(금액 불문)과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미만 용역(종류 불문)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집행하며,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은 소기업·소상공인·벤처·창업기업으로, **1억 원 이상**은 중소기업자로 제한합니다.
- **지명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 24에 따라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성립(지명대상자 5인 미만이면 모두 지명)합니다.
- **수의계약**: 천재지변·긴급재해, 특정인의 기술·품질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매장유산 발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 용역,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의 계약, 재공고입찰 후 등에서 인정됩니다.

✦ 시험 포인트

일반경쟁이 **기본원칙**이라는 점, 지역제한 고시금액(용역 국가기관 2.3억 원),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1억 원 기준, 지명경쟁의 **5인 지명·2인 신청**,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기준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3-1-③ 낙찰자 결정방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42 · 지방계약법 시행령 § 4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적격심사기준

일반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은 ①**적격심사** ②**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③**협상에 의한 계약** ④**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의 4가지입니다.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 ②**종합심사낙찰제** ③**설계공모**로 구분됩니다.

■ ① 적격심사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덤핑입찰에 따른 낙찰 예방, 계약이행 신뢰성 확보, 경영합리화·품질 향상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배점은 추정가격 5억 원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심사분야	일반용역 5억 ↑	일반용역 5억 미만	시설분야 5억 ↑	시설분야 5억 미만
해당용역 수행능력	40	30	30	20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10	10
입찰가격	60	70	60	70
합계	100	100	100	100

적격통과점수는 **85점**이며, 소프트웨어용역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육상운송용역은 **88점**입니다.

■ ②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행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를 평가해 적격자로 확정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단계 경쟁입찰**: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시행한 뒤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 시행.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이 **각각 독립된 입찰로 각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 **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시행. 2인 이상 유효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해 낙찰자 선정 가능.

■ ③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시행하며,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해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한 자와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는 분야별 배점한도 기준 **기술능력+입찰가격** 합산으로 하며, 근거 예규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기술능력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예규)	70	3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80	20
정보화사업(하드웨어 비중 50% ↑ · 1억 미만 개발 등)	90(80 가능)	10(20)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평가 결과 접수 후 **15일 이내**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미성립 시 **10일 범위** 연장 가능), 협상 성립이 안 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합니다.

■ ④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

입찰대상자들과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세부내용·이행방안을 조정·확정한 뒤 제안서를 받아 평가해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합니다. ① 기술적 요구·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대안이 다양해 최적안 선정이 어려운 경우 ③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 제조·구매·임차 ④ 내용이 복잡·고난도인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40일 전**에 입찰공고(긴급·고시금액 미만·재공고는 10일 전 가능).
- 기본 제안서를 평가해 **2인 이상** 선정, 참여자와 **각각 2회 이상** 기술적·재무적 대화 진행.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 (90)+입찰가격(10)으로 평가(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90% 기준).

■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적격심사**: 유사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를 종합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고시금액 이상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적용). PQ 배점은 설계용역·CM용역 각 100점 만점.
- **종합심사낙찰제**: 수행능력·입찰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최고 득점자 선정. 추정가격 **50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30억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이상 실시설계** 용역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 42④).
- **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 17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용역**에 적용. 2인 이상 공모안을 심사해 당선작 결정. 일반설계공모·2단계설계공모·제안공모 3가지 방식.

📌 시험 포인트

일반용역 4방법과 기술용역 3방법을 구분하고, 적격심사 통과점수(85점, 예외 88점), 2단계경쟁의 **각각 2인 이상** 요건, 경쟁적 대화의 **40일 전 공고·2회 이상 대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50/30/40억)을 정확히 기억하세요.

3-1-④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

📌 근거법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18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 등에서 제안서 평가는 관련 법령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의 합계로 합니다. 제안서는 일반평가로서 다음과 같이 온·오프라인 방식이 나뉩니다.

-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이거나 단순사업 등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금액 **20억 원 이상**(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은 **100억 원 이상**)이면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필요 시 온라인·혼합평가 가능).

기술능력 평가항목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지방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구분해 산정합니다.

구분	기술능력	입찰가격	비고
협상에 의한 계약(기재부 예규)	70	30	가격은 추정가격 80% 기준
지방자치단체(정량 20+정성 60)	80	20	가격은 예정가격 80% 기준
경쟁적 대화 최종 제안서	90	10	각 항목 50점 초과 불가,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초과 불가, 가격은 추정가격 90%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협상을 진행해 제안서 내용이 조정되면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 평가 기준 정리

제안발표(PT)를 포함한 오프라인 평가는 **20억 원 이상**(SW 유지관리 100억 원 이상)이 기준선입니다. 20억 원 미만이나 단순사업은 온라인 또는 혼합평가가 가능합니다.

3-1-⑤ 협상계약 및 경쟁적대화 계약 (절차)

📌 근거법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경쟁적 대화)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과 경쟁적 대화 방식은 모두 **제안서 평가를 거쳐 협상으로 계약을 완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절차 진입 요건과 대화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
적용상황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고부가 지식기반 서비스사업 우선)	기술요구·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거나, 대안이 다양하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물품, 복잡·고난도 계약
공고시기	일반 입찰공고에 따름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 40일 전 (긴급·고시금액 미만·재공고는 10일 전)
대화·협상	제안서평가 후 15일 이내 협상(10일 연장 가능)	참여자 2인 이상 선정 후 각각 2회 이상 기술적·재무적 대화, 사업지 현장점검 가능
평가배점	기술능력 70 + 입찰가격 30(가격 80% 기준)	기술능력 90 + 입찰가격 10(가격 90% 기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참여자가 요구해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대화에서 확인한 사항은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 시험 포인트

협상=15일 이내 협상(10일 연장), 경쟁적 대화=40일 전 공고·2회 이상 대화라는 **숫자 대비**가 핵심입니다. 경쟁적 대화는 **비공개 합의 사항 누설 금지**가 특징입니다.

3-1-⑥ 용역적격심사 및 계약이행·관리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64~§ 66·§ 74 · 용역계약일반조건 § 15~§ 18·§ 20·§ 21·§ 27·§ 32 · 적격심사기준

일반용역 총액계약(중양조달)은 **수요발생 → 조달요청(나라장터) → 규격검토·사전규격공개 → 구매결의 → 입찰공고 → 기초금액 작성 → 입찰·개찰 → 예정가격 작성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착수계 제출 → 계약이행 → 검사·검수 → 대금 청구·영수 → 계약 종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핵심 내용
규격검토·사전규격공개	구매규격(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을 사전 5일간 공개(SW사업 중 총 사업규모 5억 원 이상은 10일 이상, 긴급은 3일 이상)
기초금액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으로, 예정가격 확정 전 단계의 가격
예정가격 작성	낙찰자 선정 기준이자 계약체결 상한 금액 . 기초금액의 ±2%(국가)·±3%(지방) 범위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후 4개를 추첨·산술평균해 결정(협상·경쟁적 대화·개산계약은 생략 가능)
착수계 제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이력서·서약서 등 제출해 승인
검사·검수	검사=계약서·과업내용서 등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 / 검수=합격품의 손상·적량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
대금지급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경제위기 시 3일 이내) 지급. 조달청은 유효서류 구비 시 4근무시간 내 지급

■ 용역 이행과 계약관리

-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용역공정예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하며,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서류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제출합니다.
- **감독·공정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해 감독하며,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해 감독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물가변동(시행령 § 64)·설계변경(§ 65)·기타 계약내용 변경(§ 66)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용역수행기한 내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계약금액**을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시행령 § 74).
- **계약기간 연장**: 「용역계약일반조건」 § 18③(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의 착수지연·중단, 보증기관 보증이행, 계약상대자 책임 아닌 지체 등)에 해당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용역 일시정지**: ①계약내용 불일치 ②안전을 위한 정지 필요 ③발주기관 필요에 따른 지시 등의 경우 정지할 수 있고, 발주기관 책임 사유로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을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해지

구분	주요 사유
계약상대자 책임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 경과·미착수, 귀책으로 기한 내 미완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도달, 뇌물수수·불법·부정행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허위·부정 서류 제출 등
사정변경	정부정책 변화·법령 제·개정·과다한 지역민원·공공복리에 따른 사업취소·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지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 ,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초과

📌 시험 포인트

예정가격 $\pm 2\%$ (국가)· $\pm 3\%$ (지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사전규격공개 5일(SW 5억 이상 10일), 착수계 10일 이내, 대금 5일 이내(조달청 4근무시간), 정지 60일 초과·감액 40% 이상·정지 50% 초과와 숫자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3-1-⑦ e-발주시스템(나라장터) 활용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전자조달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 조달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이 필요할 때 세부품명·규격(과업내용서)·배정예산·예산산정내역·납품기한·특수조건·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해 나라장터로 조달을 요청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해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통보하거나 구매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해 해당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입찰공고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공고해야 하며(필요 시 일간신문 병행 가능), 개찰·낙찰자 선정·계약체결(전자계약은 전자서명)·계약 종결 정보 입력까지 전 과정이 나라장터에서 처리됩니다.

나라장터 활용 단계	주요 처리 내용
조달요청·접수	수요기관이 조달요청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본청·지방청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서 공개
입찰공고·입찰	나라장터로 입찰공고, 명시된 시간·장소에서 전자입찰 실시
예정가격 결정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중 최다 추첨 번호순 4개 산술평균
계약체결·종결	전자서명으로 계약 성립, 계약종결·분할납품이행 내용 나라장터 입력

💡 소액·직접구매 기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조달청장이 위임·통보한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유효서류 구비 시 대금을 **4근무시간** 내에 지급합니다.

✱ 쉽게 이해하기

용역은 '물건'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의 실력'을 사는 계약이라, 값보다 **과정의 품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낙찰방법도 값만 보는 적격심사부터, 규격을 나눠 겨루는 2단계경쟁, 실력·값을 함께 저울질하는 협상, 아직 답이 없어 발주기관이 업체와 **대화**하며 답을 찾는 경쟁적 대화까지 4갈래로 갈라집니다.

🔑 **암기: 일반용역 4방법 '적·2·협·대'** = 적격심사 →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 협상 → 경쟁적대화. 기술용역 3방법 'PQ·중심·설계'.

숫자	핵심 값
적격심사 통과	85점(SW중기제품·육상운송 88점)
협상 배점	기술 70 : 가격 30(가격 80% 기준)
경쟁적 대화	기술 90 : 가격 10, 40일 전 공고·2회 이상 대화
지명경쟁	5인 지명·2인 신청

⚠ **함정: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85점**(예외 88점)이 이 교재의 기준입니다. '92점·공사 95점'식으로 나오는 보기는 오답으로 처리하세요. 협상은 '15일 이내(10일 연장)', 경쟁적 대화는 '40일 전 공고'로 숫자를 반대로 섞는 함정이 있습니다.

3-2

다수공급자계약(MAS) 절차 및 이행관리

이 절의 핵심

다수공급자계약(MAS)은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비교·선택해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구매예산이 기준금액(용역 5천만 원, 중기제품 1억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은 **카탈로그계약**,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수의계약)으로 조달합니다.

3-2-①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와 이행관리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13 · 조달사업법 시행령 § 13 · 용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물품 또는 용역)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필요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직접 비교·선택해 구매하도록 하는 조달계약제도입니다. MAS는 **계약절차 간소화·수요기관 선택권 확대·조달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반복적·정형화된 품목 조달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단일계약(총액계약)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단일계약(총액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상대자	1인	2인 이상
구매방식	1인 공급자로부터 조달청 통한 수의계약(공급자 중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직접 구매(수요자 중심). 일정금액 미만은 바로 납품요구, 이상은 대상업체·평가방법 선택→경쟁→납품요구
주요 특징	간단한 계약절차·책임 소재 명확	구매 선택권 확대·경쟁 기반 가격 형성·낮은 진입장벽(계약 이후)
계약 후 경쟁	없음	있음(2단계경쟁)

MAS는 「조달사업법」 § 13과 시행령 § 13에 기본사항을 두고, 「용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구매계획 수립부터 입찰·계약체결·이행관리까지의 구체적 절차를, 「용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검사(검수) 기준 등 이행조건을 규정합니다.

시험 포인트

MAS의 핵심은 **2인 이상 계약상대자·수요자 중심 직접구매·계약 후 경쟁(2단계경쟁)** 있습니다. 근거는 **조달사업법 § 13**이며, 총액계약(1인·공급자 중심·계약 후 경쟁 없음)과의 대비가 자주 출제됩니다.

3-2-② 다수공급자계약 일반절차 이해

☞ 근거법령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조달사업법 시행령 § 13 · 국가계약법 시행령 § 64

용역 MAS 계약은 **적격성평가 → 가격협상 → 계약 체결 → 납품요구 → 계약관리** 단계로 진행됩니다. 물품 MAS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수요물자 등재 후 수요기관이 직접 검색·구매합니다.

단계	핵심 내용
① 적격성평가	신용평가등급 B- 미만 이거나 부도·파산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② 가격협상	승인 품목의 최근 1년간 규격별 가격자료를 「MAS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규격별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최빈가·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해 협상
③ 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
④ 납품요구	구매예정금액이 5,000만 원 (중기 경쟁제품 용역·중소기업자 공급 용역은 1억 원) 이상이면 5인 이상 계약상대자 대상 2단계경쟁 진행
⑤ 계약관리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 64)하고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MAS 체결이 가능한 **용역**은 ①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용역 ②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용역 ③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용역이며, 심의회 심의를 거치면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적 업체 3개사 이상 등의 요건 아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물품**은 규격(모델)이 확정·상용화되고 단가계약이 가능하며, 연간 거래실적 3천만 원 이상 업체가 세부품명 기준 3개사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2-③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및 사전심사

☞ 근거법령 · 용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조달사업법 시행령 § 13

적격성 평가는 MAS 계약체결 이전에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사전심사** 단계입니다. 핵심 결격사유는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적격성 평가를 통과하면 **가격협상**으로 넘어갑니다. 원칙적으로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간 규격별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하고, 이 규정을 따르지 못하면 부속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조달청은 규격별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최빈가격·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해 이를 활용해 가격을 협상합니다.

구분	내용
결격사유(적격성)	신용평가등급 B- 미만 /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계약이행 곤란
가격자료 제출	승인 품목의 최근 1년간 규격별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준수), 미준수 시 부속 증거자료 추가
협상기준가격	규격별 거래실례가의 가중평균가격·최빈가격·원가계산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

🌟 시험 포인트

적격성 평가 결격사유는 **신용평가등급 B- 미만·부도·파산**이 정답 키워드입니다. 가격협상 기준은 **가중평균가·최빈가·원가계산가격**이며, 카탈로그계약의 적격성평가 결격사유도 동일합니다.

3-2-④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근거법령 · 용역 MAS 업무처리규정 § 19~§ 21 · 물품 MAS 업무처리규정 § 49~§ 51

수요기관의 장은 MAS 체결된 용역을 대상으로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용역 — 중기 경쟁제품 또는 중소기업자 공급 용역	1억 원 이상
용역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 중기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물품 — 일반제품	5천만 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은 5천만~1억 원 미만 선택 적용, 1회 5억 원 이상은 제안공고)

2단계경쟁 회피 금지: 수요기관의 장은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요구하면 안 됩니다. 조달청장은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회피로 보아 차단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합니다(예산비목·회계연도가 상이하면 예외).

■ 제안요청과 대상자 선정

- 수요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안요청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 추천한 2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이면 시스템이 무작위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 마감일은 수요기관 예산 5천만 원 미만이면 **만 3일 이상(견적 요청)**, 5천만 원 이상이면 **만 5일 이상(제안 요청)**으로 설정(공휴일 제외)합니다.

■ 제안·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생성 시점 기준 종합쇼핑몰 등록 계약가격(할인 적용 시 할인 후 낮은 가격) **이하**로 제안해야 하며, 중기 경쟁제품 용역은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 제안 마감 전까지 취소 가능하나 마감 후에는 취소 불가(입력 오류 제외). 서류 누락·불명확 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 보완 요구 가능합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종합평가 기준**을 활용합니다. 기본 평가항목(가격·납품실적·경영상태·신인도)과 선택 평가항목(적기납품·서비스 수행능력·선호도·사후관리·지역업체·약자지원·수출기업 지원)을 자율 조합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평가항목(50점 이상)	가격(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납품실적	20점 이상 30점 이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이하
	신인도	불공정행위·임금체불 등 감점, 고용우수기업 등 가점
선택평가항목(50점 이하)	적기납품·서비스 수행능력·선호도·사후관리·지역업체·약자지원·수출기업 지원	각 7.5점 이하

합산점수가 동일하면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사후관리도 동일하면 **제안가격(A형)·제안율(B형)이 낮은 자**를 선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해야 합니다.

✦ 시험 포인트

2단계경쟁 기준금액(용역 일반 5천만 원·중기제품 1억 원), 제안요청 **5인 이상**, 15인 이상 시 무작위 10인 추천, 회피금지 **30일 이내** 합산 초과, 동점 시 **사후관리 → 제안가격/제안율** 순 선정이 핵심입니다.

3-2-⑤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계약관리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22 · 조달사업법 시행령 § 13의2 · 국가계약법 § 12 · § 27 · 용역 MAS 업무처리규정 § 55~ § 63

MAS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필요 시 3년 미만 가능). 차기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그 시까지 연장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 요청·자격·가격변동이 없으면 공고 종료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부정당업자 제재·거래정지 등 계약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고귀속합니다. 조합인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분할이행 시에는 (매회별 최대 이행예정량×계약단가×고시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당·부정한 행위나 계약조건 위반 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내용
거래정지(§ 55)	「조달사업법」 § 22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최소 1개월~최대 24개월 , 동기·내용·횟수 등 고려해 가중·감경)
판매중지(§ 56)	거래정지와 별개로 계약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 판매 중지
부정당업자 제재(§ 57)	「국가계약법」 § 27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및 국고귀속(§ 58)	허위·부정 서류 제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불공정 공동행위 방지(§ 59)	담합 판단 시 계약 추진 중지·해제·해지, 낙찰·납품요구 취소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브로커 불공정행위(§ 60)	담합 유도·주도, 대가 수수, 부정 알선 등 시 브로커 형사고발
환수(§ 61)	서류 위·변조,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승인 없이 규격과 다른 용역 납품, 시장거래가격을 MAS 단가보다 낮게 공급 등 부정이득 환수
차기공고·차기계약 배제(§ 62)	납품실적 없음, 거래정지 반복, 계약이행실적평가 2회 이상 연속 미흡 , 불공정행위 누적 20점 이상 등의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연장·재계약·차기계약 배제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63)	불법·불공정행위 이력 시 평가에 반영

계약이행실적 평가는 위 § 62(차기공고·차기계약 배제)의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총점기준 **2회 이상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해당 계약상대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시험 포인트

거래정지 **최대 24개월**, 분할이행 계약보증금 **10% 이상**, 차기계약 배제 사유(연속 2회 미흡·불공정 20점 이상)와 배제 기간 **1년**, 조합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가 핵심입니다.

3-2-⑥ 카탈로그계약 및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절차

🔗 근거법령 · 조달사업법 § 14·시행령 § 14· § 16 ·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①5호아목 · 클라우드컴퓨팅법 § 20③

■ 카탈로그계약

카탈로그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 16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구매할 때,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카탈로그로 계약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대상 용역은 상용화는 되어 있으나 업계 공통의 규격 확정이 곤란한 용역 등입니다.

절차는 **구매입찰공고 → 적격성평가 → 카탈로그 등록·계약체결 → 납품요구 → 대금지급 → 계약관리**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적격성평가	결격사유(신용평가등급 B- 미만·부도·파산) 없고 입찰참가자격 충족 시 카탈로그 제출
계약체결	3인 이상의 계약자와 카탈로그계약 체결, 종합쇼핑몰에 등록(계약기간 3년 원칙)
납품요구(예산별 대상자)	2천만 원 미만 1인 / 2천만~5천만 원 미만 2인 이상 / 5천만 원 이상 5인 이상 대상 제안요청
납품업체 선정기준	2천만 원 미만: 예산 범위 내 견적 제출자 / 2천만~5천만 원 미만: 예정가격의 88% (중기 경쟁제품 용역 90%) 이상 견적 중 최저가격 / 5천만 원 이상: 제안서평가 종합점수 최고
계약관리	등록 카탈로그는 계약자가 임의 수정 불가(수정 시 계약담당자 승인).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초과 시 30일 이내 중간점검 가능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 16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디지털서비스 상품**(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과 융합한 서비스)을 선택·구매하도록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① 5호아목에 따라 **수의회약**으로 진행하며, 「조달사업법 시행령」 § 14·§ 16 ③에 따라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절차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의 → 계약요청서 접수 → 계약신청 요건 평가 → 카탈로그계약 체결·전용물 등록 → 제안요청 → 제안서 평가·협상·납품요구 → 대금지급**으로 진행됩니다.

단계	내용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심의	클라우드컴퓨팅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로 디지털서비스 선정
계약 체결·등록	수의회약 방식으로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 전용물(디지털서비스물) 에 등록
제안서 평가·협상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해 85점 이상 인 업체를 적격자로 결정, 적격자와 협상해 규격·가격 결정 후 납품요구
대금지급	수요기관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계약관리 절차는 다수공급자계약과 유사하며, 부당·부정한 행위나 계약 위반 시 MAS와 같이 거래정지·판매중지·부정당업자 제재·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단,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는 제외**).

🔴 시험 포인트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 곤란·2인(계약체결 3인) 이상**, 예산별 대상자(2천만 미만 1인/2천만~5천만 2인/5천만 이상 5인)와 선정기준(88%·중기 90%)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서비스는 **수의회약·심사위원회·85점 이상 적격·전용물**이 키워드입니다.

✿ 쉽게 이해하기

MAS는 조달청이 **여러 업체(2인 이상)**와 미리 단가를 정해 종합쇼핑몰에 진열해 두고, 수요기관이 **직접 골라 담는** 온라인 장보기예요. 총액계약(1인·업체 중심)과 달리 수요자가 주도하고, 금액이 커지면 진열된 업체끼리 한 번 더 붙는 **2단계경쟁**이 붙는 게 핵심 차이입니다.

🔑 **암기: '2·직·경'** = 2인 이상 계약 · 수요자 직접구매 · 계약 후 경쟁(2단계) 있음. 근거는 **조달사업법 § 13**.

구분	핵심 값
2단계경쟁 기준	용역 5천만 원(중기제품 1억 원) 이상
제안요청 대상	5인 이상(15인 이상 시 무작위 10인)
적격성 결격	신용등급 B- 미만·부도·파산
거래정지	최대 24개월

⚠️ **합정: 계약기간은 '3년 원칙'**이며 '2년+1년'이 아닙니다. 또 회피 목적으로 금액을 쪼개면 안 되고, 최근 **30일 이내** 동일 세부품명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회피로 봅니다. 디지털서비스는 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 적격 기준은 **85점 이상**인 점을 헛갈리지 마세요.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3장)

- **용역 분류:** 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법·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반용역=기술용역 외 전부(정보화·시설유지·전시행사·장비유지·폐기물·육상운송·학술연구·광고디자인·보험) / 지방계약은 학술용역 별도
- **입찰방식 4가지:** 일반경쟁(기본원칙)·제한경쟁·지명경쟁(5인 지명·2인 신청)·수의계약(2천만 원 이하 등) / 지역제한 용역 국가기관 2.3억 미만
- **일반용역 낙찰자 결정 4방법:** 적격심사(통과 85점, 예외 88점)·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70+가격30)·경쟁적 대화(기술90+가격10, 40일 전 공고·2회 이상 대화)
- **기술용역 3방법:** PQ+적격심사 / 종합심사낙찰제(건설사업관리 50억·기본설계 30억·실시설계 40억↑) / 설계공모 (건축설계 1억↑)
- **계약절차·수치:** 사전규격공개 5일(SW 5억↑ 10일) / 예정가격 기초금액 $\pm 2\%$ (국가)· $\pm 3\%$ (지방),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 착수계 10일 이내 / 대금 5일 이내(조달청 4근무시간)
- **이행관리:** 정지 60일 초과 시 지연배상 / 계약금액 40% 이상 감액·정지 50% 초과 시 상대방 해지 / 지체상금=지체일수 $\times$ 지체상금률 $\times$ 계약금액
- **MAS:** 2인 이상·수요자 중심 직접구매·계약 후 경쟁 있음(조달사업법 § 13) / 적격성 결정=신용등급 B- 미만·부도·파산 / 계약기간 3년 원칙 / 계약 후 90일 경과·거래가 3% 변동 시 금액조정
- **2단계경쟁:** 용역 일반 5천만·중기제품 1억↑ / 5인 이상 제안요청(15인↑ 무작위 10인) / 회피금지 30일 이내 합산 / 동점 시 사후관리→제안가격·제안을 순
- **계약관리·제재:** 거래정지 최대 24개월 / 분할이행 계약보증금 10%↑ / 조합은 지급각서 / 차기계약 배제(연속 2회 미흡·불공정 20점↑, 1년)
- **카탈로그계약:** 규격화 곤란 용역·2인(체결 3인)↑ / 예산별 대상자 1인·2인·5인 / 선정 88%(중기 90%) /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심사위원회·85점 이상 적격·전용물(불공정행위 이력평가 제외)

✅ 자가 진단

1.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의 구분 기준과 근거 법령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4가지 입찰방식과 지명경쟁·수의계약의 요건을 구분할 수 있는가?
3. 일반용역 4방법과 기술용역 3방법을 배점·대상금액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가?
4. 예정가격 결정($\pm 2\%$ ·15개·4개 추첨)과 계약절차 주요 기한을 말할 수 있는가?
5. MAS의 정의·특징과 총액계약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6. 2단계경쟁 기준금액·제안요청·종합평가·회피금지를 설명할 수 있는가?
7. 카탈로그계약과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의 절차·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객관식 (10문항)

1. 용역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근거한다.
- ②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을 말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는 학술용역을 별도로 구분한다.
- ④ 보험 용역·폐기물처리 용역은 기술용역에 해당한다.
- ⑤ 정보화사업용역·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은 일반용역에 해당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보험·폐기물처리 용역은 일반용역이다.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엔지니어링·설계·감리 등 개별법에 근거한 용역이며,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정보화·시설유지·전시행사·장비유지·폐기물처리·육상운송·학술연구·광고디자인·보험 등)입니다. 따라서 보험·폐기물처리 용역은 일반용역입니다.

2. 용역계약 입찰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한경쟁입찰이 입찰방식의 기본원칙이다.
- ② 일반경쟁입찰은 자격을 수행실적·지역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하게 하는 방식이다.
- ③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성립한다.
- ④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한 종류로 다수인을 경쟁시킨다.
- ⑤ 용역 지역제한 국가기관 기준은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지명경쟁은 5인 이상 지명·2인 이상 신청이 요건이다.

일반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이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치지 않는 방식이고, 용역 지역제한 국가기관 기준은 추정가격 2억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지명경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 24에 따라 5인 이상 지명, 2인 이상 신청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3. 일반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적격심사
- ②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 ③ 협상에 의한 계약
- ④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
- ⑤ 종합심사낙찰제

정답 · 해설

✓ 정답 ⑤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이다.

일반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 4가지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PQ+적격심사·설계공모와 함께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입니다.

4. 용역 적격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적격통과점수는 모든 용역이 동일하게 90점이다.
- ② 소프트웨어용역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육상운송용역의 통과점수는 88점이다.
- ③ 배점은 추정가격 10억 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 ④ 입찰가격 배점은 5억 원 이상 일반용역에서 40점이다.
- ⑤ 적격심사는 최고가 입찰자를 자동으로 낙찰자로 결정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중기 경쟁제품 SW·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다.

적격통과점수는 원칙 85점이며, 소프트웨어용역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육상운송용역은 88점입니다. 배점은 5억 원 기준으로 나뉘고, 5억 원 이상 일반용역의 입찰가격 배점은 60점입니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과 경쟁적 대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해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한다.
- ②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③ 경쟁적 대화는 참여자 2인 이상을 선정해 각각 2회 이상 대화한다.
- ④ 경쟁적 대화는 기본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40일 전에 공고한다.
- ⑤ 경쟁적 대화의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평가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경쟁적 대화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 90 + 입찰가격 10이다.**

경쟁적 대화 방식의 최종 제안서는 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으로 평가하며, 입찰가격은 추정가격의 100분의 90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습니다.

6. 일반용역 총액계약의 예정가격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5\%$ 범위에서 결정된다.
- ② 국가계약법 적용 시 $\pm 2\%$, 지방계약법 적용 시 $\pm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다.
- ③ 복수예비가격 중 2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다.
- ④ 예정가격은 계약체결의 최저 하한 금액이 된다.
- 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도 예정가격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국가 $\pm 2\%$ ·지방 $\pm 3\%$, 15개 작성이 옳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국가계약법)· $\pm 3\%$ (지방계약법)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참가자가 추첨한 4개를 산술평균해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계약체결의 최고 상한 금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개산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다수공급자계약(MAS)과 단일계약(총액계약)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MAS의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이다.
- ② MAS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서 직접 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이다.
- ③ MAS는 계약 후 경쟁(2단계경쟁)이 있다.
- ④ 총액계약은 계약상대자가 1인이며 계약 후 경쟁이 없다.
- ⑤ MAS는 총액으로 1인 공급자와 체결하는 공급자 중심 방식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공급자 중심·1인 체결은 총액계약의 특징이다.**

MAS는 2인 이상 공급자와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비교·선택해 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계약 후 2단계경쟁이 있습니다. 1인 공급자와 총액으로 체결하는 공급자 중심 방식은 단일(총액)계약입니다.

8. MAS 적격성 평가의 결격사유로 옳은 것은?

- ①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이거나 부도·파산 상태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 ②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③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④ 계약기간이 3년인 경우
- ⑤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경우

정답 · 해설

✓ **정답 ① 신용등급 B- 미만·부도·파산이 결격사유다.**

MAS 적격성 평가의 결격사유는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9. MAS 2단계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 용역은 구매예산 5천만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 대상이다.
-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용역은 1억 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 대상이다.
- ③ 수요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해야 한다.
- ④ 회피 목적으로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요구할 수 있다.
- ⑤ 합산점수가 동일하면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④ 분할 납품요구는 회피금지 대상으로 금지된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요구하면 안 됩니다. 조달청장은 30일 이내 동일 업체·동일 세부품명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회피로 보아 차단할 수 있습니다.

10. 카탈로그계약 및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대상으로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한다.
- ② 카탈로그계약은 반드시 1인의 계약상대자와만 체결한다.
- ③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한다.
- ④ 디지털서비스는 제안서 평가에서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결정한다.
- 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에는 불공정행위 이력평가가 반드시 포함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① 규격화 곤란 용역·2인 이상이 옳다.**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가 곤란한 용역을 대상으로 2인 이상(계약체결은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합니다.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85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결정하며, 계약관리 시 불공정행위 이력평가는 제외됩니다.

OX (5문항)

11. 일반용역 총액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 42④에 따라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용역,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13. MAS 계약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MAS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필요 시 3년 미만 가능).

14. MAS 계약상대자의 부당·부정행위 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가중·감경될 수 있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55에 따라 「조달사업법」 § 22를 근거로 거래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15.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 26 ① 5호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조달사업법 시행령」 § 14· § 16에 따라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PART 3 · 제4장

공사계약관리

① 학습목표 · 핵심키워드

PART 3 · 필기 제3과목 「공공계약관리」

제4장 「공사계약관리」는 공공공사가 **기획→설계→구매(계약)→시공**의 생애주기를 따라 어떻게 발주·계약·이행되는지를 다룹니다. 건설산업의 구조와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대가와 발주방식, 공사비와 원가계산, 입찰과 낙찰자 결정(적격심사·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 기술형 공사(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공사대금 지급과 계약금액 조정까지 단계적으로 익힙니다.

학습목표 (Learning Objectives)

이 장을 학습한 후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의 구조와 건설산업의 **생애주기별 발주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건설 엔지니어링의 **사업대가 및 발주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건설 **공사비와 발주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기술형 공사의 **수행방식 및 사업자 선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공사단계의 **대금 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Keywords)

건설산업(Construction industry) · 건설엔지니어링(Construction engineering) · 건설공사업(Construction)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Engineering cost) · 공사원가(Construction cost) · 적격심사(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 종합심사제(Comprehensive examination) ·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 build) · 설계시공분리입찰(Design bid build) · 기술제안입찰(Technical proposal) · 계약금액 조정(Contract amount adjustment)

이 단원의 4단 구조

- ① 학습목표·핵심키워드 (이 화면)
- ② 본문 — 4-1 공사계약 일반개요 / 4-2 공사계약 일반절차 / 4-3 공사계약 특화절차 (법령→해설→도식→사례)
- ③ 요약노트 — 한눈에 보는 핵심
- ④ 예상문제 —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4-1

공사계약 일반개요

이 절의 핵심

건설산업은 **공사(건설업·기타공사업)**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나뉘며, 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생산)과 **건설기술진흥법**(건설엔지니어링)의 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생애주기를 따르며, 규모·성격에 따라 **일괄입찰·기술제안입찰·기타(설계시공분리)** 중 사업수행 방식을 결정합니다.

4-1-① 건설산업기본법 이해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건설산업이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 등을 완성하거나 철거하기 위해 건설 생애주기에 따라 조사·설계·감리·유지관리 등 **건설기술용역**과 시공단계의 **공사**를 총괄하는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은 크게 **공사**와 **건설기술용역**으로 분류되며, 공사는 다시 **건설업**과 **기타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이 중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건설공사(5종)**와 **전문건설공사(15종)**로 구분합니다. 종합건설공사는 토목·건축·토건·산업설비·조경공사 등 **5개 산업영역**, 전문건설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을 포함한 **15개 산업영역**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법에서 정한 **기타공사**(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문화재수리업 등)가 있습니다.

분류	내용
종합건설업종 (5종)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종 (15종)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조경식재·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설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송강기·삭도, 기계가스설비, 가스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업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문화재수리업 등
건설용역업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설계·감리업(건축사법)·감리전문업(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업역 통합(2021.1 기준)

기존에는 산업영역(종합·전문)에 따라 건설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해 왔으나, 발주자가 역량 있는 업체를 선택해 **종합·전문 간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도록 산업영역을 통합했습니다. 종합건설업만 참여하던 사업에 **주요 공종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자도, 전문건설업만 참여하던 사업에 **필요 공종 실적을 갖춘 종합건설업종** 등록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 발주와 관련된 대표 법률은 「**국가계약법**」(기획재정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행정안전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건설생산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이 종합·전문건설업과 산업을 규정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개별 공사업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4-1-② 건설기술진흥법 이해

📌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기술사법 · 건축사법

건설기술용역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정의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정의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산업활동으로 구분됩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은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품질관리·안전성검토와 시설물 운영·유지보수, 건설공사의 구매·조달,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생애주기	참여 주체	생산활동
기획(사업기획·예비타당성·타당성)	발주기관, 기획재정부·KDI 등	사업계획·평가보고서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엔지니어링업체·건축설계사무소	설계도서(설계감리)
시공(시공·감리)	종합·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시설물 건설·각종 보고서
운영(시험·시운전·안전진단·유지보수)	관련업체,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안전진단·보수·보강

건설엔지니어링 주요 분야

- **설계**: 도면·구조계산서·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해설·자문. 건축설계는 「건축법」상 건축사, 토목·전기·소방 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기술사법」에 따른 사무소 등록 기술사가 수행합니다.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품질·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기관의 권한대행을 수행.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이며 특정 공종(교량 길이 100M 이상 등)이 포함된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 **건축공사 감리**: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건축공사, 연속 5개 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3,000㎡ 이상 건축공사, 아파트·준다중이용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용역형**(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관리·감리 등 생애주기 관리를 발주자 대신 수행)과 **시공책임형**으로 구분하며, 공공사업 계약에서는 현재 **용역형만** 존재하고 시공책임형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발주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

사업대가는 크게 두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① **실비정액 방식**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로 산정하며,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를 적용합니다. ② **공사비요율 방식**은 **공사비 × 요율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로, 도로·철도·항만·상수도 등 시설물별 기본설계·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합니다.

4-1-③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이해

📌 근거법령 · 국가재정법 · 건설기술진흥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요기관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구상(공사의 필요성·위험요소·입지조건·규모·공사비 등 검토)을 마련한 뒤, 대형 공사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이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정책적 분석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합니다. **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본격 착수를 위한 조사로,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등 일부 공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성격	예산 반영·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 조사	실제 사업착수를 위한 정밀·세부 조사
조사 주체	예산 당국(관계부처 협의)	사업주관 부처
조사 비용	5천만 원 ~ 1억 원	3억 원 ~ 20억 원
조사 기간	9개월(철도 12개월) 원칙, 1회 3개월 연장 가능	충분한 시간 투입

수요기관은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 공사 규모·성격을 종합 고려해 **사업 수행 방식**을 결정합니다. 예산·공사내용·법적 면허요건·수요기관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구분	일반공사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정의	보편타당한 공사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 신규 복합공종공사	상징성·예술성·기념성·고난도 공사(규모 무관)
생애주기	기획→설계→공사계약→시공	기획→공사계약→설계·시공	기획→기본설계→공사계약→실시설계·시공 등
방식	설계시공분리(DBB)·내역입찰	설계시공일괄(턴키·DB)·도면+내역 평가	기술제안서+내역 평가(세미턴키 등)
낙찰방법	100억 미만 적격심사 / 100~300억 간이종합심사 / 300억 이상 종합심사제	설계적합최저가·설계점수조정·입찰가격조정·가중치기준·확정가격최상설계	제안점수조정·가격점수조정·가중치기준

✳ 쉽게 이해하기

공공공사는 한 개 법이 아니라 **여러 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절차는 국가·지방계약법이, 업체(業) 관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사업의 기술·품질·안전은 건설기술진흥법이 맡아 **절차·업(業)·기술** 3축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발주(계약법)와 생산(건설법·건설법)을 나눠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암기: 계약법=절차 / 건설법=업(등록·하도급) / 건설법=기술(설계·감리·평가) — '절·업·기' 3축**

구분	기준	대상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500억 & 재정 300억 이상	추진 여부(개략)
타당성	예타 통과 후	착수 위한 정밀조사

⚠ **합정: 예비타당성은 '500억+300억' 두 요건을 동시에 봅니다.** 대형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이상 & 신규 복합공종'으로, 예타 기준과 숫자가 겹쳐 보이니 구분하세요.

4-2

공사계약 일반절차 및 이행관리

💡 이 절의 핵심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일반공사**의 계약절차를 다룹니다. 공사비는 생애주기에 따라 **추정가격→설계가격→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으로 이어지고, 입찰은 **일반·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100억 미만)**와 **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100·300억 이상)**로 나뉘며, 규모가 큰 공사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가 적용됩니다.

4-2-① 이행관리 (공사비와 계약방법 검토)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공사비는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따라 여러 단계로 분류됩니다. 기획단계의 **추정가격**(개략견적으로 산정, 예산·계약방법 결정 기준)에서 출발해 설계단계의 **설계가격·조사가격**, 구매단계의 **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으로 구체화됩니다.

단계	공사비	내용
기획	추정가격	개략견적으로 산정, 예산액·국제입찰·계약방법 결정 기준
설계	설계가격·조사가격	실시설계 완료 후 명세견적, 발주기관이 가격조사로 검증
구매	기초금액	가격조사로 조정한 가격(추정가격+부가세), 복수예비가격 기준
구매	복수예비가격	기초가격 ±2%(지방계약법 ±3%) 범위에서 15개 공표
구매	예정가격	입찰 당일 가장 많이 선정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예정가격 결정 기준은 ① **거래실례가격**(조달청 통보가격·전문조사기관 공표가격·계약담당자 직접조사가격·법령 규정가격), ②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적정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때), ③ **표준시장단가**로 구분됩니다.

원가계산은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에 간접공사비를 더한 **순공사원가**, 여기에 일반관리비·이윤을 더한 **총원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건설공사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간접노무비·기타경비 등은 공사규모·기간·종류별 요율을 차등 적용하며, 산재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는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계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에 의무 적용됩니다.

4-2-② 공사 낙찰자 결정방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공사 낙찰자 결정은 공사규모와 적용 법령에 따라 **적격심사·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로 나뉩니다.

낙찰방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종합심사제 / 종합평가제	100억 원 이상(간이형: 100~300억)	종합평가제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계약법」 준용,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조달청은 **일반형·간이형·실적제한·고난도** 4개 유형을 운영합니다. 일반공사 기준 **공사수행능력 50점 + 입찰금액 50점**으로 심사합니다.

심사분야	주요 심사항목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시공실적·동일공종전문성·배치기술자), 역량(시공평가점수·규모별시공역량·공동수급체), 일자리(건설인력고용), 사회적책임 가점(건설안전·공정거래·지역경제기여도)
입찰금액(50점)	균형가격 기준 입찰금액 평가, 단가심사(-4점)·하도급계획심사(-2점) 감점, 고난도는 물량·시공계획 심사

입찰금액은 **균형가격**(각 업체 투찰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참여자 수에 따라 상·하위 일부를 제외하고 평균값을 냅니다. 낙찰자 최고점이 2인 이상이면 ① 공사수행능력점수 → ② 균형가격 근접(예정가격 88% 이상 시 저가) → ③ 사회적 책임 제외 수행능력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지방계약법」 준용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에 적용합니다. 시공실적(70점)·신용평가(30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적격성 심사를 통과(pass)하며, 통과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시행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4-2-③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란 입찰 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을 심사해 통과한 자만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PQ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경우 다음 시설물 공사에 적용합니다.

- 교량공사(교각 간격 50m 이상 또는 길이 500m 이상)
- 터널공사(터널공사가 포함된 경우 터널부분 200억 원 이상)
- 공항건설공사·항만공사·지하철공사·쓰레기소각로공사
- 폐수처리장공사·하수종말처리장공사·관람집회시설공사·전시시설

1 입찰공고 시기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최소 7일** 이전에 하되, 추정가격 10~50억 원은 **15일**, 50억 원 이상은 **40일** 전에 공고합니다. **PQ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전에 공고합니다. 긴급·재공고 입찰은 **5일** 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4-2-④ 공사 적격심사

☞ 근거법령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낙찰제는 낙찰예정자(가장 낮은 가격 투찰자)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정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부적격자 선정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사(설계-시공 분리방식)에서 「국가계약법」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지방계약법」은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합니다(종합심사·일괄·대안·기술제안·수의계약 제외).

적격점수 통과 기준은 「지방계약법」 100~300억 원 구간은 **92점 이상**, 100억 원 미만(및 「국가계약법」 100억 미만)은 **95점 이상**입니다. 최저가 입찰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통과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 심사합니다.

「국가계약법」 규모	수행능력(소계)	입찰가격
100억~50억	30점(자재·인력·하도급 적정성 각 10점 별도)	50점
50~10억	30점	70점
10~3억	20점	80점
3~2억	10점	90점

수행능력의 세부 평가요소는 ① **시공경험**(동일·유사 공사 실적), ② **경영상태**(부채비율·유동비율·신용평가등급), ③ **종합공사 신인도**(성실성·하도급·건설재해·녹색기술·일자리 관련 가감점), ④ **자재·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⑤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하도급 금액이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합계의 **82% 이상** 준수 여부)입니다.

낙찰하한율이란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일 때 예정가격 대비 허용되는 최저 투찰가격의 한계로, 가격 산식 구조·가격계수·적격통과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계약법」 기준 50~100억 원 미만은 약 **85.495%**, 10~50억 원 미만은 약 **86.745%**, 10억 원 미만은 약 **87.745%**입니다.

4-2-⑤ 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 64 · 공사업 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공사 이행 과정에서 여건 변화로 계약가격의 등락이 발생하면, 어느 한쪽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과 **설계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구분됩니다.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이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액 시 계약상대자가 신청, 감액 시 수요기관이 통보합니다.

구분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개요	개별 품목별 가격변동률로 등락폭을 반영해 산정	비목군을 분류하고 비목별 지수 변동을 반영해 산정
장점	물가변동 내역의 상세·실제 파악 가능	비목군별 지수 활용으로 조정을 산출 용이
단점	품목이 많으면 계산이 복잡하고 노력 소요	실제 내역의 물가변동 반영 판단 곤란
적용	구성품목이 적은 소규모·단기 공사	비목이 많은 대규모 복합공종·장기 공사

단품슬라이딩은 전체 물가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나 특정 자재 가격만 급등(**15% 이상** 변동, 순공사원가의 0.5% 이상 차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재만 선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②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현장 여건 변화(공사량 증감·공법 변경·설계 오류·현장 상태 상이 등)로 설계도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집니다.

- 증감 물량 단가는 **계약단가**가 원칙(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면 증가분은 예정가격 단가 적용)
-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 품목·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설계변경 시점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불성립 시 두 단가 합의 **1/2**)
- 신기술·신공법으로 공사비가 절감되면 절감액의 **30%**를 감액

✖ 쉽게 이해하기

공사비는 물이 흐르듯 추정가격→설계·조사가격→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으로 점점 정교해집니다. 마지막에 15개를 뿌려 4개를 뽑아 평균내는 이유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미리 못 알게 해 담합·운찰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암기:** 복수예비가격 15개(±2%) → 많이 뽑힌 4개 평균 = 예정가격 - '15개 뿌려 4개 평균'

낙찰방법	국가계약법	통과점수
적격심사	추정가격 100억 미만	95점 이상
종합심사제	100억 이상(간이 100~300억)	가장 높은 합산점

⚠ **함정:** 적격심사 통과점수는 공사 95점, 물품·용역은 92점입니다. 지방계약법 100~300억 구간만 92점이니 '공사=95, 지방 대형구간=92'로 짚지어 두세요. 물가변동 조정은 '90일 경과 그리고 3% 이상' 두 요건을 함께 봅니다.

4-3

공사계약 특화 절차 및 이행관리

💡 이 절의 핵심

기술형 공사와 계약 이후 이행단계를 다룹니다. **기술형 공사**는 시공자가 설계·기술제안서를 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로 나뉩니다. 계약 이후에는 **선금·기성금·준공금·지체상금** 지급과 **하도급 관리**, **시공평가·사후평가**가 이어집니다.

4-3-① 이행관리 (공사대금 지급·계약 체결)

📖 근거법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 국가계약법 시행령

낙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거나 국가·지자체 상호 간 계약 등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경제위기 시 5% 이상 감액 가능), 계약금액 5,000만 원 이하 등은 전부·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공사대금은 선금·기성금·준공금 순으로 지급됩니다.

대금	주요 기준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가능. 지급 한도액은 공사 100억 이상 30%, 20~100억 40%, 20억 미만 50%.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기성금	계약상대자는 30일마다 기성대가 청구 가능. 계약담당자는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지급. 3회마다 1회는 계약상대자가 검사 통지
준공금	준공검사 통지 후 14일 이내 검사(100억 이상·기술 특수성은 7일 연장 가능). 준공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지체상금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체일수마다 부과합니다. **지체상금액 = 지체일수 × (0.005 × 계약금액)**이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30/100**을 초과하면 계약금액의 30/100으로 합니다. 불가항력·관급자재 지연·발주기관 책임 등의 사유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3-②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 절차

📖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형 공사는 시공자가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를 내역서와 함께 제출해 최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에서는 **대형공사·특정공사·기술제안형 공사**로 구분하며 **중앙건설심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방식	내용
일괄입찰(Turn-key)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
대안입찰	발주기관 설계서상 공종 중 대체 가능한 공종을 대상으로, 원안보다 낮은 가격·동등 이상 기능의 대안설계 를 원안입찰과 함께 제출
기술제안입찰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본설계(또는 실시설계) 를 검토해 공사비 절감·공기단축·공사관리 방안을 제안. 기본설계 기술제안(실시설계+시공 수행)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시공 수행)으로 구분

구분	일반공사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주체	발주기관	입찰자	원안: 발주기관 / 대안: 입찰자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자 / 실시설계기술제안: 발주기관
예정가격 작성	작성	작성하지 않음	원안 부분만 작성	기본설계: 미작성 / 실시설계: 작성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시 조정 가능	조정 불가(발주기관 귀책 제외)	원안: 가능 / 대안: 불가	조정 가능(기술제안 채택 부분은 제한)

기술형 공사는 발주청이 매년 1월 15일까지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기관이 2월 20일까지 심의 결과를 통보한 뒤 입찰공고·설계심의·계약 단계로 진행됩니다. 심의 기준은 심의대상 시설 공종이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일괄 50%, 대안 40%, 기본설계 기술제안 40% 또는 추정가격 200억 이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30% 또는 200억 이상 등)으로 판단합니다.

기술형 공사 낙찰자 선정 방식

방식	선정 기준
설계적합 최저가	설계점수 통과 기준(60~85점) 통과자 중 최저 가격 입찰자 선정. 난도 낮은 정형화된 공사
입찰가격 조정	조정가격 = 입찰가격 ÷ (설계점수 ÷ 100). 조정가격이 가장 낮은 자 선정
설계점수 조정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 ÷ 입찰가격. 조정점수가 가장 높은 자 선정
가중치 기준	설계점수·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 최고점자 선정(가장 널리 적용). 가격점수 = 가중치 × (최저 입찰가격 ÷ 당해 입찰가격)
확정가격 최상설계	입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선정. 상징성·창의성이 필요한 공사

설계보상비는 낙찰되지 않은 참여업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대안·일괄입찰은 공사예산의 **1,000분의 20**, 기술제안입찰은 **1,000분의 10**을 확보합니다.

4-3-③ 공사 시공관리 절차

📌 근거법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 건설기술진흥법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합니다. 착공서류에는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공사 예정공정표, 안전·환경·품질관리 계획서, 공정별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월별

수행공사(공정·수행금액, 인력·장비·자재 현황, 계약변경·금액조정 내용, 현장사진)를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합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시공평가**와 **사후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및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를 대상으로,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준공 후 60일까지 수행합니다. 단순반복 공사(포장 덧씌우기·준설·단순 토공사 등)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후평가는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예상 공사비·공사기간과 실제의 비교, 예측 수요·기대효과와 실제의 비교, 문제점·개선방안, 주민 호응도·사용자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합니다.

공사현장 진행 절차(조달청 예시)

착공신고서 접수 → 착공계 접수 → 실정보고·검토 → (필요 시) 설계변경 지시 → 기성검사·기성대가 지급 → 준공검사·준공대가 지급 → 인수인계서 작성·건축물 인수. 시공사-감리단-조달청-수요기관이 단계별로 검토·통보하며 진행됩니다.

4-3-④ 기술용역 계약 절차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건설엔지니어링(기술용역) 입찰은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PQ**에 의한 경쟁입찰로 구분됩니다. 제한경쟁의 **지역제한**은 주된 영업소가 납품지·현장 소재 시·도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며, **실적제한**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실적으로 제한하되 규모·추정가격 기준 **1/3배수 이내**로 적용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규모별로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로 구분됩니다. 「국가계약법」 준용 기관은 고시금액 이상 사업수행능력(PQ)을 반영하며, 규모에 따라 **PQ+가격, PQ+SOQ(기술인 평가)+가격, 종합심사제**로 운영합니다.

선정 방법	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PQ+가격)	최저가 투찰자부터 심사, 가격점수+사업수행능력(참여기술인·수행실적·신인도)
기술인 평가(SOQ)	가격점수+사업수행능력+참여기술인(경력·역량·수행계획). 책임기술자 면접점수 포함
기술제안서 평가(TP)	가격점수+사업수행능력+기술제안서. 책임기술자 발표점수 포함
종합심사낙찰제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점수 20%. 「국가계약법」 준용 기관,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이상 등

종합심사낙찰제는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원 이상**, 실시설계 **4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50억 원 이상**에 적용하며, 2단계 평가(기술적 이행능력평가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 밖에 **협상계약 방식**(다수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건축설계 공모**(2인 이상 설계공모안 심사)도 활용됩니다.

4-3-⑤ 하도급관리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영업정지·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하수급인이 노임·중기사용료·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 계획심사**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조사내역서상 금액의 **64% 이상**이고 하도급할 부분 금액이 입찰금액의 **82% 이상**인 경우 100점, 미만이면 0점으로 산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유도합니다.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 관리·혼합** 방식으로 구성되며, 공동이행은 5인 이하·각 지분 10% 이상(1,000억 이상 대형공사는 10인 이하·5%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4-3-⑥ 하도급대금 전자적 처리를 위한 관리

☞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하도급대금이 원도급자를 거쳐 하수급인·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기성·준공 대가 지급 시 대금 지급계획상의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가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과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금 지급·수령 내역을 기록·통보·검증하는 관리 체계는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됩니다.

📌 시험 포인트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단가가 없으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단가**를 준용합니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은 위 3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직접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

✳ 쉽게 이해하기

기술형 공사는 시공자에게 **설계까지 맡기느냐**로 갈립니다. 일괄(턴키)은 '열쇠만 돌리면 되는' 완성품 인도라 설계+시공을 모두 시공자가 지고, 대안은 원안에 더 나은 **대안설계**를 엮고, 기술제안은 발주기관 설계에 절감·공기단축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 **암기: 선금 청구 14일 내 / 기성·준공대가 5일 내 / 지체상금 = 지체일수 × 0.005 × 계약금액(상한 30/100) — '선14·대가5·지체0.005'**

방식	예정가격	설계주체
일괄(턴키)	작성 안 함	입찰자
대안	원안만 작성	원안=발주기관·대안=입찰자

⚠ **함정: 일괄입찰은 발주기관 귀책이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설계리스크를 시공자가 지기 때문입니다. 시공평가는 100억 이상, 사후평가는 300억 이상 — 숫자를 바꿔치기한 보기에 주의하세요.

③ 요약노트

한눈에 보는 핵심

📌 한눈에 보는 핵심 (제4장)

- **건설산업**: 공사(건설업 종합5종·전문15종, 기타공사업) + 건설기술용역업. 2021년 종합·전문 **건설업역 통합**
- **법령**: 발주=국가계약법(기재부)·지방계약법(행안부) / 생산=건설산업기본법(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
- **발주 절차**: 기본구상→예비타당성(500억 이상&재정 300억 이상)→타당성→기본계획→사업수행방식 결정
- **사업수행방식**: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DBB) / 대형공사(일괄·턴키·DB) / 기술제안입찰
- **공사비**: 추정가격→설계·조사가격→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15개, ±2%)→예정가격(4개 산술평균)
- **낙찰**: 적격심사(국가 100억 미만·지방 300억 미만) / 종합심사제(100억 이상) / 종합평가제(지방 300억 이상)
- **PQ**: 300억 이상 의무 / 200억 이상 특정 시설물(교량·터널·공항·항만 등)
- **적격심사 통과점수**: 지방 100~300억 92점 / 100억 미만 95점. 하도급 관리계획 82% 이상
-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90일+3% 이상, 품목·지수조정률, 단품슬라이딩 15%) / 설계변경(증감=계약단가, 신규비목=변경당시단가×낙찰률)
- **기술형 공사**: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 낙찰=설계적합최저가·입찰가격조정·설계점수조정·가중치기준·확정가격최상설계
- **공사대금**: 선금(70% 이내)·기성금(30일마다, 검사 후 5일 내)·준공금·지체상금(지체일수×0.005×계약금액, 상한 30%)
- **평가**: 시공평가(100억 이상, 90% 진척~준공 후 60일) / 사후평가(300억 이상)

✅ 자가 진단

1. 종합건설(5종)·전문건설(15종)·기타공사업의 분류와 건설업역 통합을 설명할 수 있는가?
2.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대상·주체·비용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3. 공사비 5단계(추정→예정가격)와 복수예비가격 15개·예정가격 4개 산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4. 적격심사·종합심사제·종합평가제의 적용 규모와 통과점수를 구분할 수 있는가?
5. PQ 의무 적용 기준(300억/200억)과 대상 시설물을 말할 수 있는가?
6. 물가변동·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단가 산정 원칙을 설명할 수 있는가?
7.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의 설계주체·예정가격·계약금액 조정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8. 선금·기성금·준공금·지체상금의 기준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④ 예상문제

객관식 10 + OX 5 (해설 포함)

객관식 (10문항)

1.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의 업종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합건설공사는 15개, 전문건설공사는 5개 산업영역이다.
- ② 종합건설공사는 5종(토목·건축·토건·산업설비·조경), 전문건설공사는 15종이다.
- ③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종합건설공사에 포함된다.
- ④ 건설기술용역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종이다.
- ⑤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경쟁은 금지되었다.

정답 · 해설

✓ 정답 ② 종합 5종·전문 15종.

종합건설공사는 토목·건축·토건·산업설비·조경공사의 5개 영역, 전문건설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 등 15개 영역입니다.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기타공사이며, 2021년 건설업역 통합으로 종합·전문 간 경쟁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 ②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 ③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인 모든 공사
- ④ 재정지원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규 사업
- ⑤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사업만 해당

정답 · 해설

✓ 정답 ②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정보화·국가연구개발 등을 대상으로 대형 공사에 한해 시행합니다.

3. 건설공사비 중 '예정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획단계에서 개략견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 ② 기초가격 $\pm 2\%$ 범위에서 공표하는 15개 가격이다.
- ③ 입찰 당일 가장 많이 선정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다.
- ④ 설계자가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이다.
- ⑤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예정가격은 입찰 당일 공표된 복수 예비가격(15개) 중 가장 많이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①은 추정가격, ②는 복수예비가격, ④는 설계가격, ⑤는 기초금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4. 공사 낙찰자 결정방법과 적용 규모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계약법」 적격심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 ② 「지방계약법」 적격심사 —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 ③ 종합심사낙찰제 — 「국가계약법」 준용,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 ④ 종합평가낙찰제 — 「지방계약법」 준용,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 ⑤ 간이형 종합심사제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정답 · 해설

✓ 정답 ⑤ 간이형 종합심사제는 100억~300억 미만이다.

간이형 종합심사제는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면서 고난도·실적제한이 아닌 공사(「국가계약법」 해당 공사)에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의무 적용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이면 모두 의무 적용
- ②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이면 의무 적용
- ③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 적용
- ④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공사에 적용
- ⑤ 수의계약에도 반드시 적용

정답 · 해설

✓ 정답 ② 300억 원 이상 의무 적용.

PQ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의무 적용하며, 2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량·터널·공항·항만·지하철 등 특정 시설물 공사에 적용합니다.

6. 적격심사 낙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낙찰예정자(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다.
- ② 「지방계약법」 100억~300억 원 구간은 종합평점 92점 이상이면 낙찰자가 된다.
- ③ 100억 원 미만은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가 된다.
- ④ 하도급 관리계획은 하도급 금액이 입찰금액 합계의 82% 이상인지를 평가한다.
- ⑤ 최저가 입찰자가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유찰 처리한다.

정답 · 해설

✓ 정답 ⑤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반복 심사한다.

최저가 입찰자가 적격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통과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 심사합니다. 즉시 유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으로 옳은 것은?

-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경과 & 조정률 1% 이상
- ② 계약체결일(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3% 이상 증감
- ③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 조정률 5% 이상
- ④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조정률 10% 이상
- ⑤ 조정률 요건 없이 90일만 경과하면 조정

정답 · 해설

✓ 정답 ② 90일 이상 경과 & 3% 이상 증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액 시 계약상대자 신청, 감액 시 수요기관이 통보합니다.

8. 기술형 공사의 낙찰자 선정 방식 중 '입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 ①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 ② 입찰가격 조정 방식
- ③ 설계점수 조정 방식
- ④ 가중치 기준 방식
- 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정답 · 해설

✓ 정답 ⑤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은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적 설계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합니다.

9. 지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체상금액 = 지체일수 × (0.05 × 계약금액)
- ②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50/100을 초과하면 50/100으로 한다.
- ③ 지체상금액 = 지체일수 × (0.005 × 계약금액), 상한은 계약금액의 30/100
- ④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 ⑤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정답 · 해설

✓ **정답 ③ 지체일수 × (0.005 × 계약금액), 상한 30/100.**

지체상금액은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0.005)을 곱해 현금으로 납부하며, 계약금액의 30/100을 초과하면 30/100으로 합니다.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등의 사유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②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영업정지·면허취소된 경우
-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④ 하수급인이 노임·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이 입증되어 직접지급 정지가 요청된 경우
- ⑤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정답 · 해설

✓ **정답 ④ 체불 입증·직접지급 정지 요청 시에는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수급인이 노임·중기사용료·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 직접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OX (5문항)

1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실비정액 방식은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로 산정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실비정액 방식은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부가가치세를 합산해 산정하며,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를 적용합니다.

12.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에서만 적용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종합심사낙찰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관에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 준용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에는 종합평가낙찰제가 적용됩니다.

13.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계약담당자는 공사준비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한도액은 계약금액 규모별(100억 이상 30% 등)로 정해집니다.

14.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x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합니다.

15. 사후평가는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내용과 효과를 조사·분석해 수행한다. (o / x)

정답 · 해설

정답: o

사후평가는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예상·실제 공사비와 공사기간 비교, 수요·기대효과 비교, 문제점·개선방안 등을 조사·분석해 사후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시공평가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사가 대상입니다.